

감 사 보 고 서

- 2022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종합감사 -

2023. 5.

중 소 벤 처 기 업 부
감 사 관 실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 기관 현황	2
1. 일반현황	2
2. 예산현황	3
III.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4
1. 정책자금 용자제한 요건 확인·관리 부적정(기관주의·통보)	4
2. 대출금 용도 외 사용 관리 부적정(개선요구)	8
3.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운영 부적정(개인주의·통보·시정요구·개선요구)	18
4. 보험 가입 누락 등 담보물 관리 소홀(기관주의·시정요구)	25
5. 대여금 소송에 따른 지연배상금 적용 부적정(기관경고)	28
6. 공탁금(배당금) 수급권리자 변경 미흡(통보)	32
7. 담보공탁금 회수처리 미흡(개인주의·시정요구)	35

8. 법원 배당금 수령지연 부적정(개인주의·개인경고·시정요구)	38
9. 통합정보시스템 관리 소홀(통보)	41
10. 전환사채 인수계약상 특약 설정·관리 부적정(개선요구)	43
11. 출장관리 부적정(기관경고·개선요구·시정요구)	50
12. 복무관리 부적정(통보·기관주의)	61
13. 자체감사의 신분상 조치에 대한 효력 확보 미흡(통보)	67
14. 의원면직제도 운용 부적정(기관주의)	71
15. 사내 대출제도 운영 부적정(개선요구)	73
16. 자산관리 부적정(기관주의)	78
17. 사택 관리·운영 부적정(개선요구)	81
18. 공공기록물 관리 부적정(기관주의)	85
19. 상품권 관리 미흡(통보)	88
IV. 처분 요약	90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16년 종합감사 이후 5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2022년도 자체 감사계획 및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집행, 재무건전성 개선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여 정책자금 운영 현황과 예산·인사·복무 등 기관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주기능 수행의 투명성·공정성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로 인사·예산·계약·복무·징계 등 기관운영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운영의 투명성, 적정성, 사후관리 실태 및 기관 전반의 재정건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우선 실지감사에 앞서 2022. 11. 25.부터 같은 해 12. 9.까지 서면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같은 해 12. 12.부터 12. 28.까지 3주간 감사인원 10명을 투입하여 관련 서류 검토와 담당자 면담 등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 결과 확인된 사항과 관련하여 피감기관 등을 대상으로 질문·답변 과정을 거치는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23. 3. 24.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 기관 현황

1. 일반현황

가. 설립 근거 및 주요 업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79. 1. 30. 설립되었으며, 2009. 11. 22.부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68조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중진공은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발전과 산업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진공은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 진단사업, 수출마케팅, 해외산업 협력 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인력양성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조직 및 인력

중진공의 조직은 6본부, 11실, 16처, 33지역본·지부, 6연수원, 1학교, 24해외센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총 1,436명이다.

< [표 1] 중진공 인력 현황(2022.11.30.기준) >

구분	본부	소속기관
직제	6본부, 11실, 16처	33지역본·지부, 6연수원, 1학교, 24해외센터
정원	484명	952명
현원	482명	901명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2. 예산현황

중진공이 관리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2022년도 기준 100,418억 원으로 수입의 경우 정부재정 수입과 자체 수입으로 구성되며, 지출의 경우 사업비와 기금운영비, 차입 원리금 상환비 등으로 구성된다.

< [표 2] 중진공 예산현황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21년			'22년			
	본예산(A)	추경 등(B)	최종(C=A+B)	당초(D)	최종(기금변경)	증감(E=D-A)	
수입	□ 정부재정	15,331	2,667	17,998	12,566	12,566	△2,765
	□ 자체수입	90,397	6,041	96,438	84,052	87,852	△6,345
	○ 채권발행	54,810	7,000	61,810	42,298	46,098	△12,512
	○ 융자회수금 등	35,587	△959	34,628	41,754	41,754	6,167
계	105,728	8,708	114,436	96,618	100,418	△9,110	
지출	□ 사업비	63,668	8,700	72,368	57,748	61,548	△5,920
	○ 용자사업	54,100	6,000	60,100	50,975	54,775	△3,125
	○ 경상사업(연수, 마케팅 등)	2,082	-	2,082	2,090	2,090	8
	○ 자본사업(모태펀드 출자 등)	7,486	2,700	10,186	4,683	4,683	△2,803
	□ 기금운영비	1,268	8	1,276	1,323	1,323	55
	□ 차입원리금상환 등	40,792	-	40,792	37,547	37,547	△3,245
계	105,728	8,708	114,436	96,618	100,418	△9,110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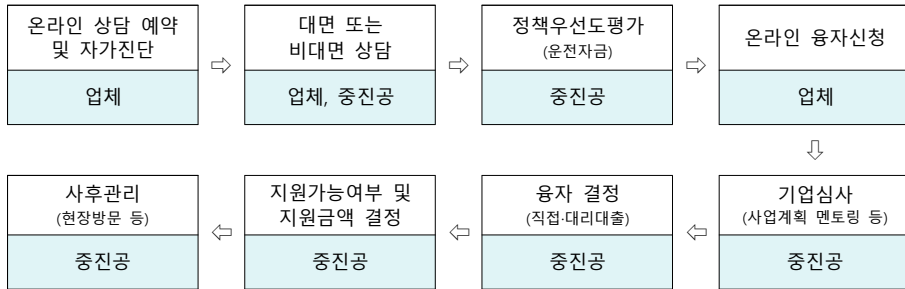
Ⅲ. 감사결과

Ⅲ-1 정책자금 용자제한 요건 확인·관리 부적정

1. 업무 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 계획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등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며 용자 절차는 아래 [그림1]과 같다.

< [그림 1] 중진공 용자 절차 >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2. 법령 등 관련 근거

중진공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계획을 공고하고 있으며,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계획 공고」(이하 “용자공고”이라 한다)¹⁾에 따르면 용자제한기업에는 휴·폐업중인 기업 등 15가지의 제한기업 유형²⁾이 나와 있다.

1) 중소기업진흥부 공고 제2022-561호(‘22.11.1.)

2) 「용자공고」의 용자제한기업의 유형(15개)

① 휴·폐업중인 기업,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④ 정책자금 용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가. 용자제한기업 ⑥, ⑧ 내용(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 관련

중진공은 용자공고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의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한 기업의 경우와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경우 용자를 제한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진공은 브로커 개입, 허위 작성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용자 상담·심사하는 과정에서 파악하고 있고³⁾, 해당 기업의 관련 기사 검색을 통해 자금 횡령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⁴⁾, 파악된 기업 명단을 중진공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각 지역 본·지부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⁵⁾되었다.

그 결과 타 지역 본·지부나 본사에서는 해당 용자제한기업이 공유되고 있지 않아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나. 용자제한기업 ⑦ 내용(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 관련

중진공은 용자공고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된 기업의 경우 용자를 제한하여야 한다.

자제의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⑥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용자신청이 제한된 기업(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용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⑦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된 기업, ⑧ 임직원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⑨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⑩ 중진공 지정 부실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⑪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⑫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⑬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용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윤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3) 용자공고 라.용자제한기업 ⑥

4) 용자공고 라.용자제한기업 ⑧

5) 중진공 제출자료에 따르면, 33개 지역 본·지부 중 기업 명단으로 관리 중이거나 관리할 예정이라고 한 곳은 10곳, 나머지 23곳은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신

그런데 중진공은 그간 SIMS⁶⁾의 기업 지원이력을 통해 제재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으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라 한다)이 제재 조치한 기업의 명단을 SIMS의 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이라 한다)⁷⁾에 제공하기 곤란하다는 사유⁸⁾로 감사일 현재('22.12월)까지 기정원이 보유한 R&D 지원사업 제재 이력에 대한 자료를 연동하지 않은 채로 용자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제재 조치를 받고도 용자를 받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어 정책자금 집행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다. 용자제한기업 ⑬ 내용(SIMS 지원실적 100억원 초과) 관련

중진공은 용자공고에 따라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용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용자를 제한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진공은 누적 지원실적 확인시 직원이 SIMS에 직접 접속하여 기업별 수기 확인을 통해 검토하고 중진공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실적 계산 착오 및 SIMS 정보 불완전성 등으로 인한 오류 사례⁹⁾가 발생함에 따라 정책자금 집행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관계자 의견】

중진공은 감사 내용을 수용하면서 위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용자제한요건을 확인하는 등 용자제한기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① 앞으로 용자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② 용자제한 요건을 적절히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

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3조(시스템 운영자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 제6항 및 영 제10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자로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시스템 운영자”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8) 중진공 측에 따르면 기정원에서 보유한 제재조치 기업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사전에 정보 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기관(ex.중진공, 중기연)으로는 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

9) 단순 실적 계산 착오로 인해 실적산정 예외사유인 매출채권보합, 신성장기반자금이 누적 지원금액에 산정, SIMS 정보 불완전성으로 인해 동일한 지원금이 '20년 11월, 12월에 중복 산정됨('23.3.20. 제출자료)

III-2 대출금 용도 외 사용 관리 부적정

1. 업무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은 「직접대출 및 대출금 관리 요령」 제68조에 따라 대출금 용도의 사용 방지를 위해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 대출금사용내역표 제출 의무화 등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2. 법령 등 관련근거

「직접대출 및 대출금 관리요령」 제68조에서는 3억원 초과 운전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을 대상으로, 업체별 전용계좌 사용의무 약정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전용계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대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¹⁰⁾ “대출금사용내역표” 제출¹¹⁾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거나 기타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사유 발생 일주일 전 “예외사항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출금 사용내역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한편 중진공은 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대출금사용내역표 및 전용계좌 사용내역 사본 등을 통해 자금 사용내역을 점검하여야 하고, 요청자료 미제출 업체와 서류 점검 시 용도의 사용 혐의가 발견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자금 사용내역을 조사하여 “대출금사용내역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용내역 점검을 통해 ① 대출금의 용도의 사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용도의 사용 금액을 전용계좌로 재예치 요구하고, 용도의

10) 당해일까지 대출금을 전액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 제출

11) 제출방법 ①대상 : 별지 제5-7호서식(대출금사용내역표) 및 전용계좌 사용내역 사본

②방법 : 담당자에게 우편이나 FAX로 송부

③기타 : 필요 시 추가 소명자료 제출 요청 가능

사용 금액을 재예치하지 않는 경우 용도의 사용 금액 또는 대출금 전액을 회수(기한이익상실 등)하고, 동일사유 2회 이상 발생 시 3년간 신규대출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② 대출금사용 내역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정해 제출을 요구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현장조사 실시하며, 2회 이상의 제출 요구에도 대출금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년간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나아가 ③ 대출금사용내역표를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수정제출을 요구하고, 2회 이상 허위 기재 사실 발견 시 3년간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17년 이후 대출금 사용내역 점검을 통해 용도의 사용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용도의 사용 총 36건 중 재예치 완료는 24건, 약정해지는 8건, 입력오류는 4건으로 파악된다.

< [표 3] 용도 외 사용 적발 및 조치 현황 >

(단위: 백만 원)

구분	기업명	요청 일자	용도의 사용 금액	요청방법	요청내용	재예치 완료일	조치 결과
1		21.04.06	60	유선	1개월 이내 재예치	21.05.25	재예치 완료
2		20.07.22	25	유선	1개월 이내 재예치	-	약정해지
3		21.02.23	2	유선	1개월 이내 재예치	21.02.24	재예치 완료
4		17.08.31	85	현장 실사	1개월 이내 재예치	17.09.29	재예치 완료
5		18.06.26	62	공문	1개월 이내 재예치	18.07.25	재예치 완료
6		17.08.15	13	유선	1개월 이내 재예치	-	약정해지
7		18.06.29	47	현장 실사	1개월 이내 재예치	-	약정해지
8		21.04.22	730	유선	1개월 이내 재예치	21.05.31	재예치 완료
9		19.06.20	7	유선	1개월 이내 재예치	19.07.30	재예치 완료
10		21.03.25	200	유선	1개월 이내 재예치	21.03.25	재예치 완료
11		18.02.12	30	유선	1개월 이내 재예치	-	약정해지

나아가 대출금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않아 3년간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 사례가 7건으로 확인되었다¹²⁾.

< [표 4] 대출금사용내역 점검에 따른 신규대출 취급제한 >

(단위: 백만 원)

구분	기업명	자금명 (금액)	요청일자 (1차)	요청일자 (2차)	요청방법	현장조사	신규대출 제한 조치일
1		청년창업 (50)	18.02.21 (불응)	19.03.27 (불응)	구두	19.06.21	19.09.25
2		재창업 (30)	19.07.04 (불응)	20.05.25 (불응)	구두	20.05.25	20.05.25
3		재창업 (50)	20.03.31 (불응)	20.06.11 (불응)	구두	20.03.31	21.03.31
4		재창업 (100)	20.05.20 (불응)	21.02.24 (불응)	구두	20.09.28	21.02.25
5		재창업 (130)	18.02.21 (불응)	18.03.14 (불응)	구두	18.09.06	21.04.14
6		긴급경안 (500)	- ¹³⁾	-	구두	21.04.08	21.08.11
7		재창업 (150)	22.08.18 (불응)	22.08.23 (불응)	구두	22.09.26	22.09.26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3. 검토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전용계좌 사용에 대한 관리 소홀

전용계좌 사용은 해당 기업의 다른 자금과 구분 관리하여 대출금의 용처를 확인 가능하게 함으로써 용도의 사용 점검을 위한 필수 제도이다. 하지만 중진공은 기업 편의 등을 이유로 전용계좌에서 타 계좌(국세청 등록 법인계좌 등)로 이체하여 사용한 대출금에 대해서도 전용계좌 사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 전용계좌(중진공 대출금 입금과 출금 내역만 있는 계좌) 사용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¹⁴⁾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기업은 예비창업 및 창업초기 기업으로 별

12) 허위계좌로 인한 신규대출 취급제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13) ㈜A은 대표 자살시도 등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 후 제출가능성 없이 제제조치 확정

14) 전용계좌 사용 표본조사 : 총 300건(3억원 초과 80건, 청년전용 150건, 재창업 70건) 조사(전용계좌 사용을 점검할 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표본조사 실시)

구분	기업명	요청 일자	용도의 사 용 금액	요청방법	요청내용	재예치 완료일	조치 결과
12		20.08.19	30	유선	1개월 이내 재예치	20.08.20	재예치 완료
13		-	-	-	-	-	입력오류
14		18.09.17	4	현장 실사	1개월 이내 재예치	18.09.20	재예치 완료
15		-	-	-	-	-	입력오류
16		-	-	-	-	-	입력오류
17		17.09.29	92	현장 실사	1개월 이내 재예치	-	약정해지
18		18.07.02	13	현장 실사	1개월 이내 재예치	-	약정해지
19		18.08.31	62	현장 실사	1개월 이내 재예치	-	약정해지
20		18.10.22	95	공문	1개월 이내 재예치	19.10.02	재예치 완료
21		18.06.08	39	공문	1개월 이내 재예치	18.11.30	재예치 완료
22		17.11.13	3	유선	1개월 이내 재예치	-	약정해지
23		18.11.30	5	유선	1개월 이내 재예치	19.12.10	재예치 완료
24		18.06.08	9	현장 실사	1개월 이내 재예치	18.08.15	재예치 완료
25		18.07.02	25	유선	1개월 이내 재예치	18.07.11	재예치 완료
26		18.07.04	10	유선	1개월 이내 재예치	18.07.11	재예치 완료
27		19.08.13	12	현장 실사	1개월 이내 재예치	19.09.06	재예치 완료
28		-	-	-	-	-	입력오류
29		19.06.08	108	공문	1개월 이내 재예치	20.05.28	재예치 완료
30		19.07.15	24	유선	1개월 이내 재예치	19.07.30	재예치 완료
31		18.09.18	26	유선	1개월 이내 재예치	18.12.20	재예치 완료
32		19.03.11	6	현장 실사	1개월 이내 재예치	19.03.16	재예치 완료
33		19.04.23	1	유선	1개월 이내 재예치	20.02.06	재예치 완료
34		18.03.13	150	공문	1개월 이내 재예치	18.03.15	재예치 완료
35		19.07.25	13	유선	1개월 이내 재예치	19.08.12	재예치 완료
36		19.02.11	22	유선	1개월 이내 재예치	19.12.16	재예치 완료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도의 사업용 계좌가 없어 자금운용을 전용계좌로 일원화하여 사용함에 따라 전용계좌 사용비율이 60% 정도이나, 3억 원 초과 운전자금 및 재창업자금 대출기업은 사업 규모 확대 등에 따른 자금운용 효율화를 위해 거래처별·자금목적별로 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함에 따라 전용계좌 사용비율은 37% 정도로 파악된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법인계좌라고 하더라도) 대출금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¹⁵⁾. 하지만 증진공의 관리편의를 위해 전용계좌 사용만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경우 출금이 필요한 거래시 마다 출금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일정 기간 거래를 모아 한꺼번에 출금할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자금의 용처를 확인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는 바, 이러한 점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용도의 사용 판단 기준의 부재

용도 외 사용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지역본·지부 담당자별로 각기 다양하고 그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

< [표 5] 주요 용도의 사용 인정 사례 >

연번	구분	용도의 사용 인정 사례	검토
1	직원 교육비	사업운영과 무관한 개인용도 자금 사용으로 판단(주)B]	직원 교육이 사업운영과 관련될 경우 용도내 사용으로 인정 가능
2	시설 구입비	사업운영과 무관한 시설 구입으로 판단 [(주)C]	해당 시설이 사업운영과 관련될 경우 용도내 사용으로 인정 가능
3	차량 구입비	영업용 차량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비영업용 자산 취득으로 판단(D)	해당 차량의 주된 용도가 영업과 관련될 경우 용도내 사용으로 인정 가능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 15)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용도 외 점검은 실무적으로 대출금이 입금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대출금액에 이르기 까지 지정 용도에 사용된 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수협은행(잠실지점, 전경국 지점장 통화): 당행계좌로 운전자금 입금(전용계좌 X), 자금승인 시 용도를 특정하여 대출하며 사후적으로 용도의 점검은 본사 감리부서에서 시행
 - 농협은행(본사 담당자 통화): 당행계좌로 운전자금 입금(전용계좌 X), 자금승인 시 용도 확인 후 대출, 대출 후 1개월 내 용도의 점검
 - 기업은행(본사 담당자 통화): 당행계좌 또는 전용계좌(상품별 상이)로 운전자금 입금, 자금승인 시 용도 확인 후 대출, 대출 후 6개월 내 용도의 점검

다. 용도의 사용 적발시 사후 관리 소홀

상기 [표 5]에서와 같이, 용도의 사용이 적발된 후 재예치를 요구하는 방식과 대출금사용내역표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이 공문이 아닌 구두, 현장방문 등으로 그 조치 방법 및 절차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재예치 완료된 24건을 분석한 결과, 아래 [표 6]과 같이 재예치 요구시 설정한 1개월이 초과하였음에도 「직접 대출 및 대출금 관리요령」에 따른 용도의 사용 금액의 회수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최단 10일에서 최장 346일까지 방치한 사례(11건)가 발견되었다.

< [표 6] 용도의 사용 재예치 기간(1월) 도과 현황 >

(단위: 일, 백만 원)

번호	업체명	자금명 (대출금)	재예치 요구일/ 완료일	도과 일수	재예치 금액	참고사항
1		재창업 (200)	'21.4.6/ '21.5.25	20	60	1. 사후관리 이력 - (21.4.6) 대출금사용내역점검 결과 용도의 사용발견 - (21.4.6) 유선 및 이메일로 재예치 요구 - (21.5.25) 최초 '21.4.23부터 '21.5.25에 걸쳐 재예치 완료 2. 재예치 1개월 도과사유 - 해당기업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 확인했으나, 기업의 영세한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재예치 독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음
2		청년창업 (100)	'19.4.23/ '20.2.6	260	1	1. 사후관리 이력 - ('19.4.23) 대출금사용내역표 및 증빙서류 점검을 통해 용도 외 사용 발견 - ('19.4.23)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즉시 재예치를 요구 - ('19.5.8) 이메일을 통해 사용내역 증빙 보완서류 추가접수 - ('19.6.4) 이메일을 통해 재예치 입금내역 제출 추가요구 - ('19.8.14) 문자를 통해 재예치 입금내역 제출 추가요구 - ('19.11.28) 문자를 통해 재예치 입금내역 제출 추가요구 - (20.2.5) 이메일을 통해 재예치 입금내역 제출 추가요구 - (20.6.17) 문자메시지를 통해 재예치 입금내역 제출 추가요구, 업체가 당일 입금내역 제출 - (20.6.17) '20.2.6에 재예치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사용내역 점검 완료 2. 재예치 1개월 도과사유 - 용도의 사용 확인 후 1개월 이내 재예치 1회 요구했으나, 소규모 창업기업 여건상 신속한 회신 지연 - 1개월 경과후에도 5차례에 걸쳐 재예치 요구하였으나 해당기업의 자금정정이 악화되어 재예치 실행이 지연됨 - 사용내역 점검시 업체에 따라 2~3회의 추가점검 요구도 발생할 수 있는데 재예치 대상사후관리 건 발생시 전산 시스템을 통해 별도 고지되지 않아 담당자가 개인기록을 통해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적기조치에 어려움이 있음

3	신시장 (800)	'21.4.22/ '21.5.31	10	730	<p>1. 사후관리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4.22, 용도의 사용 발견) 운전자금을 시설자금으로 활용한 사항 인지 - ('21.4.22) 해당금액이 고액으로 일시상환을 어려워해 5월말까지 재예치 요청 - ('21.5.31) 1차 '21.5.6, 420백만원, 2차 '21.5.31, 310백만원 재예치 완료 <p>2. 재예치 1개월 도과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특성상 재예치 자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소외되며, 동사는 거래처로부터 매월 말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 중진공이 5월말까지로 유예해준 건임 - 기업이 재예치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고객민원과 기업 지원목적 등을 고려할 때 재예치를 점검일로부터 1개월로 하는 압박은 실무적으로 쉽지 않았음
4	재창업 (130)	'19.6.20/ '19.7.30	11	7	<p>1. 사후관리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20) 직원 교육비 명목으로 사용한 7백만원을 용도의 사용으로 판단 - ('19.6.20) 유선상으로 재예치 요구 - ('19.7.30) 최초 '19.7.25부터 '19.7.30에 걸쳐 재예치 완료 <p>2. 재예치 1개월 도과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지자체 공사수수 감소 및 대금회수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재예치 자금마련에 시간소요 -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황 및 용도의 사용으로 판단한 사유(내부 직원교육에 활용)를 감안할 때 기업에 재예치를 반복적으로 압박할 경우 민원유발 소지 높았음
5	재창업 (200)	'18.10.22/ '19.10.2	315	95	<p>1. 사후관리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10.22) 기업이 제출한 증빙서류 불일치로 재확인 요청 - ('18.12월경) 소명 불충분으로 소명자료 추가제출 - ('18.12~'19.7) 유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속 소명요구 - ('19.07, 기한의 이익 상실안내) 소명서 제출 및 재예치 의사 표명 - ('19.08~'19.10) 재예치 지연으로 이행청구 내용증명 발송 - ('19.10.2) 최초 '19.7.25부터 '19.10.2에 걸쳐 재예치 완료 <p>2. 재예치 1개월 도과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자금난으로 재예치 자금확보에 애로를 겪었으며, 불가피하게 약 3개월간 분할하여 재예치 실시
6	재창업 (100)	'18.6.8/ '18.11.30	146	39	<p>1. 사후관리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6.8) 재창업 자금 일부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출금 등 용도의 사용 발견 - ('18.6~'18.11) 멘토링 활동 시 재예치 지속 요구 - ('23.1.3) 재예치 완료 여부 확인을 위한 거래내역 제출 구두요청 - ('23.1.18.) 재예치 완료여부 확인을 위한 거래내역 제출 요청(내용증명 발송) - ('23.1.20) 재창업자금 거래내역 확인 결과, '18.6.20부터 '18.11.30까지 재예치 완료 확인 <p>2. 재예치 1개월 도과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예치 각서 징구 및 멘토링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재예치를 요청했으나, 재예치 자금을 마련하는데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됨 - 재예치 요구 후 담당자 퇴사, 담당팀장 TF 발령, 관할부서 이관, 시스템 입력(담당자가 점검완료로 입력) 오류 등 애로사항 있었음

7	청년창업 (30)	'18.11.30/ '19.12.10	346	5	<p>1. 사후관리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11.30) 유선 멘토링 및 대출금사용내역 점검 시 차량구입비를 용도의 사용으로 판정 - ('18.11.30) 유선으로 차량구입비 4,966,102원을 재예치 할 것을 요구 - ('19.3.25) 방문 멘토링을 실시하여 정기 점검에서 지적한 재예치 건에 대해 재차 권고 - ('19.12.10) 용도의 사용금액 4,966,102원 재예치 완료 <p>2. 재예치 1개월 도과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영업이 사업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현금흐름 창출에 어려움 지속, 신속한 재예치를 하지 못함 - 대출금의 재예치를 독촉하고 압박하는 것은 기업에게는 기업현장의 애로를 도외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대출기업의 협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고객의 민원제기 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장 담당자로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음
8	청년창업 (70)	'18.6.8/ '18.8.15	39	9	<p>1. 사후관리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6.8) 멘토링 및 대출금 사용내역점검 중 개인카드비용, 차량렌탈 등 용도의 사용발견 - ('18.6.8) 용도의 사용 확인 즉시 재예치 요구 - ('18.8.15) '18.7.19, '18.8.15, 2회에 걸쳐 용도의 사용 금액 전액 재예치 완료 <p>2. 재예치 1개월 도과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재예치 자금 마련하는 데 시간소요 - 기업 현장 애로, 고객민원, 기업지원 목적 등을 최대한 고려한다면 재예치 압박에 실무상 한계가 있음
9	재창업 (100)	'18.9.18/ '18.12.20	64	26	<p>1. 사후관리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9.18) 대출금사용내역표 및 증빙서류 점검을 통해 용도의 사용 발견 - ('18.9.18) 유선으로 즉시 재예치 요구 - ('18.10.29) 현장실사 및 재예치재요구 - ('18.12.20) 재예치완료 되었음을 확인하고 사용내역 점검 완료 <p>2. 재예치 1개월 도과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사업장에서 영위중인 근로자 2명의 소기업으로 매달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지출이 발생하며, '18.11월 정부 R&D 사업신청 준비로 인해 재예치 자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소요됨
10	청년창업 (100)	'19.6.8/ '20.5.28	326	100	<p>1. 사후관리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8) 1차멘토링 및 대출금 사용내역표 점검 시 용도의 사용내역 발견 - ('19.6.8) 유선으로 즉시 재예치를 요구, 대표자 사유서 및 각서징구, 방문면담 등 시행. 다만, 소규모 창업기업으로 재예치 금액을 일시 납부 하기 어려워 함 - ('20.5.28) '19.7.30부터 '20.5.28까지 전용계좌로 재예치 하고 사용내역 점검 완료 <p>2. 재예치 1개월 도과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초기, 상시근로자 3명 이하의 소규모 개인기업으로 재예치 자금을 단기간 마련하는데 애로가 있었음 - 유동성 부족으로 재예치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사업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자금여력이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환입하기로 각서를 징구받고 장기에 걸쳐 환입함

11	재창업 (100)	'19.2.11/ '19.12.16	281	22	1. 사후관리 이력 - ('19.2.11) 대출금사용내역표 등 점검결과 용도의 사용 (가수금상환)을 발견함 - ('19.2.11) 유선으로 즉시 재예치를 통보 및 이행 촉구 - ('19.12.16) 재예치 완료 및 정상 사용(급여지출) 확인 2. 재예치 1개월 경과사유 - 대표자 포함 직원 2명의 소규모 기업으로 사무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으며, 대표자가 직접 관리업무를 처리하다보니 기한에 맞춰 재예치를 하는데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됨 - 자금환경이 영세한 중소기업의 현장상황을 고려한다면, 재예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기업 현장 애로 및 대표자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음
----	--------------	------------------------	-----	----	--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3년간 신규대출 제한의 근거가 되는 용도 외 사용 횟수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동일사유'를 개별 용도 외 사용 횟수와 무관하게 하나의 대출 내 용도 외 사용을 모두 1건으로 해석하는 등 사후관리가 소홀하게 운영되고 있다.

라. 용도 외 사용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부재

현재 용도 외 사용은 중진공 지역본·지부 대출 담당자들이 개별적으로 용도 외 사용을 점검하여 대출금사용내역 점검표를 작성하여 지역본·지부장의 결재를 받은 후, 용도 외 사용 여부만을 내부 시스템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용도 외 사용의 현황 및 사후 조치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 담당자 변경 등 사정 변경시 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진공은 용도 외 사용 적발시 해당 용도 외 사용의 적발일 및 그 내용, 재예치 요청일자·완료일자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용도 외 사용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중진공은 대출금 용도 외 사용 점검방식 표준화, 시스템 개선 및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대출금 사용내역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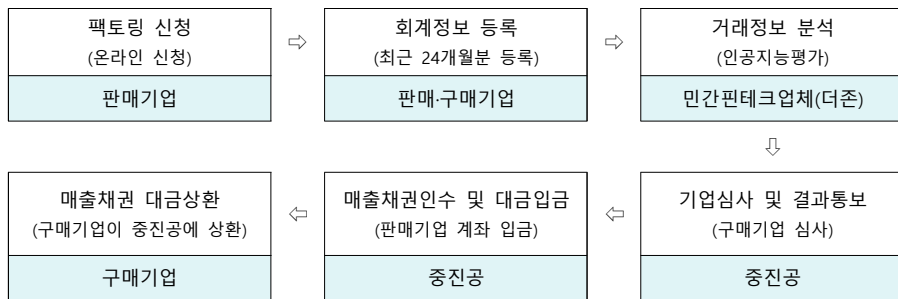
대출금 용도 외 사용에 대한 판단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시고,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1. 업무 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라 한다.)은 중소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 지원을 위해 2022년 3월부터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이하 “팩토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사업추진 절차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판매기업이 사업신청서를 제출(온라인)¹⁶⁾하면 중진공이 이를 심사·승인하여 판매기업에 매출채권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해당 대금을 구매기업으로부터 회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 [그림 2] 팩토링사업 운영 절차 >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2. 법령 등 관련 근거

< 공통사항 >

중진공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운용규정」(이하 “운용규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팩토링 기간, 한도, 할인율 등 팩토링 지원조건은 공고¹⁷⁾에서

16)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mes.or.kr>)

17) 중소기업부 공고 제2022-237호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요령」(이하 “사업요령”이라 한다.)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팩토링사업 공고상 신청대상 및 지원조건에 따르면 판매기업은 구매기업과 최근 1년 내 3회 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연간 지원 한도는 판매기업 10억 원, 구매기업 30억 원 이내로 하되, 1회 한도는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중진공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르면 직원은 봉사하는 마음가짐과 겸허한 자세로 공정·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매출채권 분할신청 및 회수 관련 >

「사업요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판매기업은 팩토링을 신청함에 있어 매출채권을 분할 또는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요령 제31조 제2항 등에 따르면 허위자료 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매출채권을 발생시킨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매출채권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업요령」 제31조에 따르면 중진공이 보유한 매출채권이 기한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거나,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구매기업에 대하여 곧바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채권회수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팩토링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

「운용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팩토링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팩토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되어 있고, 「사업요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팩토링 결정기준에 미달하여 지원 제외된 기업 중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담당 부서장 및 팩토링 이용

기업의 관할지역 지역본·지부장이 판단한 기업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가. 매출채권 분할신청에 대한 검토 및 채권 회수 관리 소홀

중진공은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주)Q 등 244개 업체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아래 [표 7] “팩토링사업 지원 현황”과 같이 109개 업체(44.7%)에 총 375억 원을 지원하여 이 중 330억 원(88%)을 회수하였다.

< [표 7] 팩토링사업 지원 현황 >

(단위: 개, 천 원)

구분	판매기업	구매기업	지원금액(a)	회수금액(b)	미회수금액(c=a-b)
2022년	109	59	37,500,000	32,962,220	4,537,780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중진공 「사업요령」에 따르면 팩토링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매출채권을 분할하여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담당자는 업체가 매출채권을 분할하여 신청하였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중진공이 보유한 매출채권이 기간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채권보전조치¹⁸⁾(회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중진공은 판매기업[(주)W]이 총 508,525,000원의 매출채권(세금계산서)에 대해 2022. 7. 20. 사업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해당 금액이 판매·구매기업[(주)W↔(주)E] 간 최근 1년 매출금액(1,409,616,593원)의 1/3(469,871,728원)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에서 탈락하자 같은 날 위 세금계산서(508,525,000원)를 취소하고 이를 108,525,000원과 400,000,000원으로 분할 발행하여 사업에 재신

18) 채권자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물적 담보나 인적 담보를 확보하는 것을 말함.

청하였는데도 사업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같은 해 7. 25. 그대로 승인하였다.¹⁹⁾

이를 비롯하여 중진공은 아래 [표 8] “매출채권 미회수 명세”와 같이 위 사업 관련 총 375억 원의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인수하고 같은 금액만큼 자금을 집행하였는데, 이 중 330억 원(88%)은 정상 회수된 것으로 확인된 반면 나머지 45억 원(12%)은 납기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업체가 납기 연장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연장을 승인해줄 뿐 「사업요령」에 따른 채권보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 [표 8] 매출채권 미회수 현황 >

(단위: 천 원, 일)

구분	업체명	지급금액(a)	회수금액(b)	미회수금액(c=a-b)	납기 초과일수 ²⁰⁾
1		977,688	505,966	471,722	131
2		2,964,863	612,604	2,352,259	125
3		663,144	527,051	136,093	33
4		2,969,980	2,888,395	81,585	47
5		987,691	24,395	963,296	36
6		562,378	29,553	532,825	112
총 계		9,125,744	4,587,964	4,537,780	-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집행됨과 아울러 정당하게 사업에 참여한 업체와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19) 당시 팩토링금융실 AAA AA(근무기간: 22.1.1 ~ 22.12.31.)은 팩토링사업을 처음 도입하여 민간협업의 비대면 디지털 방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소 후 재신청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소 미흡하여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답변하였고, 現 팩토링금융팀 BBB BB(근무기간: 23.1.1 ~ 재직 중)은 앞으로 팩토링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위와 같은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리에 철지를 기하겠다고 답변

20) 2023. 1. 31. 기준

나. 심의위원회 운용 부적정

중진공은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평가기준 미달 등의 사유²¹⁾로 사업승인이 거절된 (주)P 등 94개 업체(구매기업) 중 10개 업체(10.6%)를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위 10개 업체와 거래한 (주)Q 등 33개 업체(판매기업)에 아래 [표 9] “심의위원회 부의 업체 등 현황”과 같이 약 103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 [표 9] 심의위원회 부의 업체 등 현황 >

(단위: 천 원, 개)

구분	심의위원회 부의 업체(구매기업)	지원금액	판매기업수	심의결과
1		2,964,863	4	모두 가결
2		1,645,987	7	
3		820,862	2	
4		819,369	2	
5		40,006	1	
6		32,779	1	
7		1,459,881	2	
8		921,029	1	
9		610,527	4	
10		942,680	9	
총 계		10,257,983	33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중진공 「복무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탈락업체를 심의위원회에 부의시킬 때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부의시켜야 한다.

그런데 중진공은 위 사업을 운용하면서 총 94개 업체를 평가등급기준²²⁾ 미달 등의 사유로 탈락시키고서도 이 중 (주)T 등 10개 업체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21) (주요탈락사유) 구매기업 지원제외업종에 해당, 구매기업 중진공 평가등급기준 미달, 세금계산서 유효기간 초과, 구매기업 신청한도금액 초과, 판매기업, 구매기업이 한국신용정보원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등록 기업에 해당 등

22)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결정 평가등급 기준

기준 없이 심의위원회에 부의시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었다.²³⁾

탈락업체 심의위원회 부의 사례

- L(주)[구매기업]은 X[판매기업]와의 최근 1년 內 거래 횟수(3회 이상부터 지원가능)가 1회에 불과하고, 사업신청금액(32,514,361원)이 최근 1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8,833,200원)의 1/3을 초과하는데도 동 업체를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지원금을 지급
- M(주)[구매기업]은 N(주)[판매기업]과의 최근 1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이 101,550,000원으로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인 33,850,000원보다 약 14배 많은 478,500,000원을 신청하였는데도 동 업체를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지원금을 지급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추진하여 평가등급미달 업체에 사업지원금이 지급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중진공은 앞으로 매출채권 사업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민간협업 기관과 신속하게 시스템을 개선²⁴⁾하며, 사업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요령」 등 자체규정에 따라 제재조치하겠다고 하면서,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히 회수 방안을 마련하여 회수함과 아울러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기준미달 업체에 대한 심의위원회 부의 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분	판매기업	구매기업
신용위험평가등급	Credit Risk 10이상(1~10)	Credit Risk 6이상(1~6)

23) 중진공은 내부기준(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활성화 관련 제도개선안)을 통해 과거 중진공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들 중 지역본부의 추천 등을 통해 매출채권팩토링 지원필요성이 있는 10개 업체를 선별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였는데, 앞으로는 위 기준을 구체화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 모두를 심의위원회에 부의 대상으로 고려(평가)하는 등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답변
* 팩토링 평가등급 미달 2단계 이내 기업 등

24) 사업 신청 취소·탈락 후 재신청하는 경우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답변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 ①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집행되는 등 위 사업에 대한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부서장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AAA AA²⁵⁾ (주의)
- ② 지원금 부당 수령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요령」 등에 따라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③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히 회수 방안을 마련하여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④ 사업참여(탈락)업체에 대한 심의위원회 부의 등 기준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25) AAA BB 팩토링금융실 근무기간: 2022년 1월 ~ 2022년 12월, 現 SSSSSS SS으로 근무 중

III-4

보험 가입 누락 등 담보물 관리 소홀

1. 업무 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라 한다.)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규정」 및 「직접대출 및 대출금 관리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이하 “업체”라고 한다.)에 시설자금대출 등을 실행하고, 채권의 변제확보 수단으로 부동산 등 업체 물건(이하 “담보물”이라 한다.)에 담보권²⁶⁾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중진공 「직접대출 및 대출금 관리요령」(이하 “관리요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담보로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화재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²⁷⁾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요령 제56조 및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은 업체(채무자)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에 계속 가입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보험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보험에 계속 가입할 것을 업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관리요령」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가입에 대하여 업체와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 중진공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요령 제73조 제2항에 따르면 위 “제56조 제2항”에 따라 중진공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해당 보험료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중진공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보험에 가입한 담보물은 총 7,063건

26)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27) 중진공은 통상 5년 만기인 대출과 달리 보험의 경우 통상 1년 단위로 계약함에 따라 보험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만기 전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고 답변

이며 이 중 6,485건(91.8%)은 업체가, 나머지 578건(8.2%)은 중진공이 가입하여 관리하고 있다.²⁸⁾

중진공은 담보물에 화재 등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담보물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보험가입을 지체하거나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아울러 중진공이 업체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업체에 보험료를 신속히 청구하여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중진공은 아래 [표 10] “대출연도별 보험 미·지체가입 현황”과 같이 2017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1,426건의 담보물에 대하여 최단 1일에서 최장 1,400여일을 지체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4건의 담보물에 대해서는 감사일 현재(2022년 12월)까지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10] 연도별 보험 미·지체가입 현황 >

(단위: 건, 일)

연도	보험가입 대상	미가입		지체가입 ²⁹⁾	
		건수	최소~최대	건수	최소~최대
2017	705	0	-	328	1~1,461
2018	1350	0	-	520	1~1,209
2019	1167	1	88	299	1~887
2020	1435	2	31~32	187	1~365
2021	1137	1	62	90	1~184
2022	1269	0	-	2	3~11
총 계	7,063	4	31~88	1,426	1~1,461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이를 비롯하여 중진공은 아래 [표 11] “연도별 보험료 회수 현황”과 같이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업체를 대신하여 총 1,003백만 원의 보험료를

28) 중진공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기준으로 담보물 건수 등 수치를 산출하였는데, 동 시스템에 담보물 및 보험가입 내역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수치 파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

29) 당해연도 최초가입 이후 각 차수별 갱신이 1일 이상 지연된 업체 모두 포함

납부하였는데, 이 중 887백만 원(88.4%)은 회수된 것으로 확인된 반면 나머지 116백만 원(11.6%)은 감사일 기준(2022년 12월) 최장 2,100여일이 지나도록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11] 연도별 보험료 회수 현황 >

(단위: 건, 백만 원)

연도	대지금금(a)		회수(b)		미회수(c=a-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	102	236	94	233	8	3
2018	105	177	104	176	1	0
2019	92	161	85	159	7	2
2020	84	143	67	119	17	24
2021	89	140	85	138	4	3
2022	106	146	55	62	51	84
총 계	578	1,003	490	887	88	116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중진공은 앞으로 담보물에 대한 보험가입이 지체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아직 회수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해서는 경·공매 등을 통해 신속히 회수처리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① 앞으로 담보물에 대한 보험가입이 지체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관주의)

② 미회수 보험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회수 방안을 마련하여 회수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III-5 대여금 소송에 따른 지연배상금 적용 부적정

1. 업무 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은 「직접대출 및 대출금 관리요령」 등에 따라 채무자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할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³⁰⁾이나 소멸시효³¹⁾ 연장을 위해 법원에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배상금³²⁾ 등에 대해서는 소송상대방(채무자)에게 청구하여 회수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00분의 12)³³⁾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중진공 「직접대출 및 대출금 관리요령」(이하 “관리요령”이라 한다.) 제132조 제4항에 따르면 소송상대방(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 또는 대여금 소송 판결 시 법원에서 지연배상금율(연 100분의 12)³⁴⁾을 명시한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중진공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채무불이행 채무자를 상대로 총

30)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31)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일정기간(5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32) 재판확정금액(채무자가 중진공에 갚아야 할 채무) × 지연일수(소송일수 포함) × 이자율

33) 「소송특례법」상 이자율 변동 내역: '15.9월까지(20%), '15.10월~'19.5월(15%), '19.6월부터(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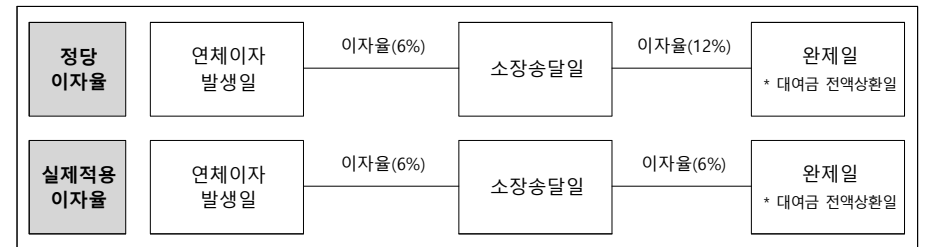
34) 중진공 자체 이자율 변동 내역: '18.12월까지(12%), '19.1월부터(6%)

6,606건의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중 5,208건은 소송이 확정되었다

중진공 「관리요령」에 따르면 소송이 확정된 채무자에게 지연배상금(연체이자 등)을 청구할 때에는 연체이자 발생일로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중진공 자체 연체이자율(6%)을 적용하되,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특례법」상 이율(12%)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낮게 적용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정·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중진공은 아래 [그림 3] “지연배상금 산정 구간별 이자율 비교”와 같이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발생한 지연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12%의 ‘정당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임의로 6%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정·청구하고 있었다.³⁵⁾

< [그림 3] 지연배상금 산정 구간별 이자율 비교 >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이처럼 지연배상금을 잘못 산정하여 법원으로부터 배정받은 지연배상금(배당금) 중 일부를 채무자에게 환급한 사실도 확인되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업체(V 주식회사)가 중진공에 운전자금 대출³⁶⁾을 받고서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자 중진공은 2013. 12. 2. 해당 대출약정을 해지하고 법원에 위업체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 전액(원금 등: 42,238,820원³⁷⁾, 지

35) 중기부 산하 타 공공기관(00-00신용보증재단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소장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의 경우 12%의 이율을 적용·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36) 대출일: 2010.03.05. 대출금액: 50,000,000원

연배상금: 27,279,871원)을 2019. 5. 28.지급받았다.

이후 증진공은 위 배당금을 전산(통합정보시스템)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송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경우 「소송특례법」상 이율(18.7월 기준 15%)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기존 전산에 등록되어 있던 증진공 자체이율(6%)을 그대로 적용하여 전산처리(67,520,798원)한 후 금액(1,987,893원)³⁸⁾이 일부 남았다는 이유로 이를 같은 해. 6. 11. 업체에 모두 환급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12] 부당환급 지연배상금 산정방식 >

구분	지연배상금	지연배상금 산정방식 ³⁹⁾
정당 지연배상금	27,279,871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연배상금산정 기초금액(38,390,507원), 경과일수(2003일) * 지연배상금 = 기초금액 × 이자율(12.50%) × 경과일수/365
실제적용 지연배상금	25,291,978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연배상금산정 기초금액(38,390,507원), 경과일수(2003일) * 지연배상금 = 기초금액 × 이자율(11.55%) × 경과일수/365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증진공은 대여금 소송이 확정되면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 사이 지연배상금의 경우 당초에 적용하였던 6% 이자율을 「소송특례법」상 이율로 조정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대여금 소송 관련 지연배상금을 산정·청구 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7) 원금: 37,260,000원, 이자: 1,130,507원, 대지급금: 3,848,313원

38) 실제 환급액: 총 4,514,385원[정당 환급액(법원 과입금): 2,526,492원, 부당환급액: 1,987,893원]

39) 이자율 변동에 따른 구간별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계산 편의를 위해 평균값(소송특례법 이율: 12.50%, 증진공 자체 이율: 11.55%)으로 계산함. 아울러 위 산정방식으로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였을 때 일부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는 기한이익 상실 전 발생한 부분 연체이자(951,346원)가 포함되어 일부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

■ 「소송특례법」에 따라 2013.12.2.부터 2018.6.26까지는 연 12%, 2018.6.27.부터 2019.5.28.까지는 연 15%의 지연배상금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증진공은 2013.12.2.부터 2018.12.31까지는 연 12%, 2019.1.1.부터 2019.5.28까지는 연 6%의 지연배상금 이율을 적용함.

【조치할 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대여금 등 소송 관련 지연배상금 산정·청구 시 관련 법 등에서 정한 이율을 임의로 낮게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관경고)

1. 업무 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은 채무불이행 등 대출사고 발생 시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 자산(부동산 등)을 가압류⁴⁰⁾하고, 이후 법원이 가압류 자산을 경매·매각한 후 공탁금(배당금)⁴¹⁾을 배정하면 법원에 출석하여 이를 수령하는 방식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공탁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탁물(배당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그 권리를 증명하도록 되어 있고,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3항에 따르면 채권자가 법원에 공탁금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⁴²⁾를 바꿔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공탁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⁴³⁾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중진공은 채무자[C(주)]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출사고가 발생하여 2003년 3월 17일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⁴⁴⁾하였고, 2007년 1월 4일 법원으로부터 공탁금(배당금) 104,082,380원을 배정 받았다. 한편 위 채무자는 같은 해 5월 31

40)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41)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경매하여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금전

42) 집행 법원이 배당 준비를 위하여 배당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43) 법원의 공탁안내문이 송달된 경우 시효가 중단되고 송달된 날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됨

44) 서울남부지방법원 “0000카합000” 부동산가압류

일 중진공에 본인의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

중진공은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공탁금(배당금)을 배정 받은 후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을 때에는 집행법원에 공탁금수령포기의사를 표시하여 법원이 공탁금에 대한 수급권리자를 채무자나 전액배당 받지 못한 채권자로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진공은 아래 [표 13] “공탁금 및 채무이행 등 현황”과 같이 위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정받은 공탁금(104,082,380원)의 수급권리자를 채무자 등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채권회수일인 2007년 5월 31일부터 감사일 현재(2022년 12월)까지 이를 변경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다.

< [표 13] 공탁금 및 채무이행 등 현황 >

(단위: 원)

채무자	경매사건번호	배당기일	공탁번호	공탁금	완제일
C(주)	서울중앙지법 0000타경0000	2007.1.4.	0000금000	104,082,380	2007.5.31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위 공탁금 104,082,380원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귀속⁴⁵⁾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중진공은 위 공탁금 관련 법원의 시효중단 소명 절차 및 가능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시효중단 소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해당 공탁금의 처리 방안을 검토하여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철저한 공탁금 관리를 통해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45) (법원문의결과) 법원은 2012.4.19. 수급권리권자(중진공)에게 위 배당금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여 동 배당금에 대한 시효가 2022.4.18. 완성되었다고 답변 다만, 수급권리권자가 2012.4.19.부터 2022.4.18.사이 법원에 동 배당금을 청구하는 등 시효중단 사유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답변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위 공탁금 관련 법원의 시효중단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수급권리자를 채무자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시효중단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 배당금에 대한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적절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Ⅲ-7 담보공탁금 회수처리 미흡

1. 업무 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은 아래 [그림 4] 와 같이 채무불이행 등 대출사고 발생 시 회수를 위해 법원에 금전을 담보(담보공탁금)해 놓고 채무자의 자산(부동산 등)을 가압류⁴⁶⁾한다.

이후 채무자에 대한 담보사유가 소멸⁴⁷⁾되면 법원에 담보취소 결정을 신청하여 기(既)맡겨 놓은 담보공탁금⁴⁸⁾을 회수한다.

< [그림 4] 담보공탁금 회수 절차 >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2. 법령 등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담보제공자(중진공)가 담보공탁금의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중진공의 「직접대출 및 대출금 관리요령」(이하 “관리요령”이라 한다.) 제129조에 따르면 법원에 납부한 담보공탁금은 지체 없이 회수절차를 진행하

46)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47) 소송의 확정, 담보권리자(상대방)의 동의, 취하 등
 48) 제단이 불량채무자의 자산을 가압류하면서 법원에 담보로 맡겨 놓는 금액

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중진공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채권보전조치(부동산 가압류 등)를 위해 총 1,165,443,286원의 담보공탁금을 법원에 제공하였다.

중진공은 「민사소송법」 등에 따라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담보취소를 신청(법원)하여 담보공탁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진공은 위 담보공탁금 총 1,165,443,286원 중 983,196,531원은 담보사유가 소멸되어 회수하였고, 140,750,000원은 담보취소 신청 중이거나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등 미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확인된 반면, 나머지 38,000,000원은 담보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아래 [표 14] “담보공탁금 미회수 명세”와 같이 담보사유 소멸일로부터 최장 629일 지난 감사일 현재(2022년 12월)까지도 담보취소를 신청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⁴⁹⁾

< [표 14] 담보공탁금 미회수 현황('22.12.20. 기준) >

(단위: 원, 일)

업체명	공탁번호	공탁일자	공탁소멸일 (소송확정일)	미회수 담보공탁금	회수신청 지연일	업무 담당자
		2021-03-23	2021-03-31	25,000,000	629	QQQ
		2021-07-20	2022-02-23	12,000,000	300	WWW
		2022-01-25	2022-10-05	1,000,000	76	RRR
총 계	-	-	3건	38,000,000	-	-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담보공탁금 38,000,000원이 미회수 상태로 방치되어 중진공 사업 등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49) 위 [표 14]의 당시 업무담당자들은 앞으로 담보공탁금 회수를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

【관계기관 의견】

중진공은 앞으로 담보공탁금 회수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담보사유가 소멸된 담보공탁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① 앞으로 담보공탁금 회수를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담보공탁금 회수 업무를 태만히 한 업무관련자들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QQQ(5급), WWW(4급) (주의)⁵⁰⁾

※ RRR(4급)의 경우 III-8 사안과 병합하여 경고조치 함.

② 위 “담보공탁금 회수지연 현황”의 “미회수 담보공탁금”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50) 업무관련자 현황

관련자	직급	행위당시부서(근무기간)	현부서(근무기간)
QQQ	5급	Q실(21.1월~22.12월)	W실(23.1월~)
WWW	4급	E처(22.1월~)	E처(22.1월~)

1. 업무 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은 채무불이행 등 대출사고 발생 시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가압류⁵¹⁾하고, 이후 법원이 가압류 부동산을 경매·매각한 후 공탁금(배당금)⁵²⁾을 배정하면 법원에 출석하여 이를 수령하는 방식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중진공 「직접대출 및 대출금 관리요령」(이하 “관리요령”이라 한다.) 제129조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배정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회수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중진공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76,663,548,992원의 배당금을 법원으로부터 배정받았다.

중진공은 「관리요령」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진공은 위 배당금 총 76,663,548,992원 중 72,911,545,476원은 정상 회수되었거나 배당금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 반면, 나머지 3,752,003,516원은 아래 [별표 1] “배당금 수령 지연 명세”와 같이 최장 271일이 지난 감사일 현재(2022년 12월)까지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

51)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52)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경매하여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금전

인되었다.⁵³⁾

그 결과 배당금 3,752,003,516원이 미회수 상태로 방치되어 중진공 사업 등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중진공은 앞으로 법원 배당금 회수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① 앞으로 배당금 회수를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배당금 회수 업무를 태만히 한 업무관련자들 중 10회 이상 누락한 RRR에게는 III-7 사안과 병합하여 경고를, 나머지 인원(TTT 등 5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RRR(4급) (**경고**) TTT(4급), YYY(4급), UUU(4급), OOO(4급), III(5급) (**주의**)⁵⁴⁾

② 아래 [별표 1] “배당금 회수지연 명세”의 “미회수 배당금”에 대하여 즉시 회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53) 아래 [별표 1]의 당시 업무담당자들은 앞으로 배당금 회수를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

54) 업무관련자 현황

관련자	직급	행위당시부서(근무기간)	현부서(근무기간)
RRR	4급	M처(21.1월~22.12월)	O본부(23.1월~)
TTT	4급	M처(22.10월~)	M처(22.10월~)
YYY	4급	P처(21.6월~)	P처(21.6월~)
UUU	4급	M처(20.7월~)	M처(20.7월~)
OOO	4급	M처(21.7월~)	M처(21.7월~)
III	5급	P처(19.7월~22.6월)	J본부(22.7월~)

< 배당금 회수 지연 명세('22.12.20. 기준) >

(단위: 원)

업체명	사건번호	배당일자	미회수 배당금	소송확정일	회수 지연일	업무 담당자
		2022-05-12	9,718,714	2022-11-30	20	RRR
		2022-11-17	1,200,763,269	근저당권 ⁵⁵⁾	33	TTT
		2022-07-29	23,375,625	2022-11-16	34	RRR
		2022-09-30	4,035,201	2022-11-12	38	YYY
		2022-06-22	25,614,066	2022-11-08	42	TTT
		2022-04-28	22,378,771	2022-10-28	53	RRR
		2022-08-23	1,615,794	2022-10-22	59	RRR
		2022-10-21	709,601,897	근저당권	60	UUU
		2022-10-19	94,829,943	2022-06-21	62	OOO
		2022-05-11	55,541,753	2022-10-13	68	RRR
		2021-07-26	19,681,209	2022-10-07	74	RRR
		2021-11-25	44,041,207	2022-10-05	76	TTT
		2022-06-22	901,614	2022-09-22	89	RRR
		2022-07-26	896,768	2022-09-15	96	RRR
		2022-09-06	28,377,690	2021-03-26	105	RRR
		2022-08-11	1,468,623,854	근저당권	131	FFF(회사)
		2022-08-08	4,635,299	2022-08-09	133	OOO
		2022-04-14	1,652,170	2022-08-06	136	FFF(회사)
		2022-01-13	29,127,445	2022-07-23	150	FFF(회사)
		2022-06-22	687,591	2020-05-19	181	RRR
		2022-05-09	1,371,636	2021-06-25	225	OOO
		2020-01-15	4,443,271	2022-04-29	235	RRR
		2022-03-24	88,729	2021-06-17	271	III
총 계	-	23건	3,752,003,516	-	-	-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55) 근저당권의 경우 소송확정일이 불필요(배당 후 즉시 수령 가능)

1. 업무 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고 한다.)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사업기간: 2016년 1월 ~ 12월, 총사업비: 1,550,630,000원)⁵⁶⁾하고, 2017년 1월 전면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2016년 1월)에 따르면 중진공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범위로 대출관리, 리스크 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을 제시하였고, 기대효과로는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보화 관리 효율성 증대 등을 제시하였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중진공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규정」 및 「직접대출관리요령」 등에 따라 대출·채권보전조치·소송업무 등을 수행하고, 해당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자금지원, 대출관리, 리스크 관리⁵⁷⁾ 등 업무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중진공은 통합정보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여 직원의 적극적 활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중진공은 대출·채권보전조치·소송 등 업무처리 후 관련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제대로 등록하지 않아 대출관리, 리스크 관리 등에 위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6) 기존 분리되어 있던 전산시스템을 통합·고도화하는 방식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57) 대출금 대한 사후관리, 채권관리, 전사위험관리 등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누락 등 미활용 사례

- 소송 등 업무처리 후 관할 법원 및 사건번호 등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소송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곤란함.
- 대출·배당금 등에 대한 시효연장 기간 등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소멸시효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곤란함.
- 담보물에 대한 보험가입·갱신 정보 등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담보물 관리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이 곤란함..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이처럼 통합정보시스템이 대출관리, 리스크 관리 등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면 직원들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하는데도 중진공은 “직원들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독려(공지 등)하였는데도 직원들이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내버려 두고 있었다.

그 결과 소송사건 및 담보물 보험가입 등에 대한 전산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통합정보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대출관리 및 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가 적시에 처리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중진공은 앞으로 대출관리 및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통합정보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던 요인을 분석하여 활용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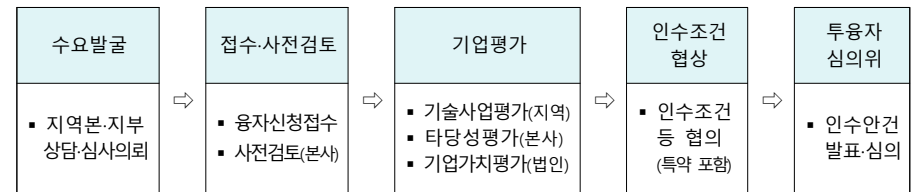
대출관리 및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시고, 통합정보시스템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을 분석하여 활용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III-10 전환사채 인수계약 상 특약 설정·관리 부적정

1. 업무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은 아래 [그림 5]와 같이 전환사채인수(성장공유형 대출)를 각 지역본·지부에서 수요 발굴 후 본사 성장융합금융처(기업심사센터)에서 투자 타당성 평가, 회계법인 실사 및 기업가치 평가를 거친 후 “투융자 복합금융 심의위원회”⁵⁸⁾(이하 ‘위원회’이라 한다.)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 [그림 5] 전환사채인수 지원절차 >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중진공은 전환사채 인수계약 체결 시 본 계약서에서 규정되지 않은 가격조정 요건(리픽싱⁵⁹⁾), 세부 이행사항(가수금, 대여금 정리) 등을 전환사채 인수계약 특약(이하 ‘특약’이라 한다.)으로 설정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고, 특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환사채 인수 협상 시 해당 기업과 합의를 기초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58) 「중소기업 투융자 복합금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라, 위원장은 투융자 복합금융 담당이사(혁신성장본부장)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선정하는 10인 이내로 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그리고 위원회 의결은 같은 요령 제9조에 따라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9) 리픽싱이란 주가가 낮아질 경우 전환가격이나 인수가격을 함께 낮추어 가격을 제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말함.

< [표 15] 성장공유형 대출 특약설정 현황(2017년~2022년) >

(단위: 개, %)

구분	특약 내용	건수	비중
본계약서 개정사항 특약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융자 복합금융 운영요령 개정시행일 전, 신청접수 된 건의 계약서 현행화를 위해 공통적·일반적 개정사항을 특약 설정 	28	23.7
리픽싱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채 인수조건 관련 입장차가 큰 경우 향후 경영성과 (매출손익·제품개발)를 기준으로 주식 인수가격을 재조정 	25	21.2
이해관계인 대여금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상장 심사기준에 맞춰 경영투명성(특수관계인 간 거래)확보를 독려하고 상장기업 질적요건 완비 목적 	23	19.5
관계사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상장 심사기준에 맞춰 경영투명성(특수관계인 간 거래)확보를 독려하고 상장기업 질적요건 완비 목적 	11	9.3
이해관계인 가수금 출자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재무구조 개선 도모 	9	7.6
대표자 지분인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지분매수청구권 행사 시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요건이 필요, 계약위반 사항발생 시 대표자에게 매수청구권 행사 특약설정을 통해 보완 	7	5.9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라운드 선투자자 계약사항 준용을 통한 형평성 확보 회사의 특정자산 처분금지, 투자금의 사용용도 한정 이해관계인 또는 자회사 소유의 지적재산권을 회사로 이전 	15	12.7
합계		118	100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특약을 포함한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대한 사후관리는 대출관리와 투자자산관리로 구분하여, 대출관리는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 사채 상태의 관리를 의미하고 이는 일반 정책자금과 동일하게 채권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투자자산 관리는 전환사채 인수계약 상 당사자 의무 이행관리 및 가치 제고 활동을 의미하고, 이는 사안 중요성에 따라 일반관리와 중요 의사결정으로 구분⁶⁰⁾하여 일반관리는 지역본·지부에서, 중요 의사결정은 본사 성장융합금융 처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다.

60) 자산의 처분, 기한의 이익상실, 계약의 원천적 변경 등이 중요의사 결정 사항에 해당하고, 중요의사 결정을 제외한 통상적인 사항과 현황조사 등을 일반관리 사항으로 구분

2. 법령 등 관련근거

「중소기업 투융자 복합금융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2조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 체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 계약서 양식은 같은 요령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정하고 있다. 특약은 각 건별로 중진공과 피투자회사 간 상호협의 후 계약서 내 특약사항을 규정한 계약조항에 따라 설정하고 요령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인수조건을 심의·의결하여 최종 확정한다.

아울러 「운영요령」 제24조는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이 전환사채 인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상환전환우선주 인수, 신주인수권 행사 및 출자전환에 따른 보통주 인수대금 납입 후 신속하게 상업등기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일체의 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성장공유형 대출 지원기업에 대하여 신용대출 기업에 준하여 「직접대출 및 대출금 관리요령」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영요령」 제40조에서는 투자자산 관리를 위해 지역본·지부장은 ① 투자주식 보유기업의 주주총회 참석, ② 계약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후속조치, ③ 임의상환기업의 투융자복합금융 사업 심의위원회 부의, ④ 정기 기업현황조사, ⑤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징구 및 검토, ⑥ 그 외 필요한 투자자산의 일반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투융자 복합금융사업 담당부서장은 중요한 계약변경 및 투자자산 처분사항의 위원회 부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가. 특약 설정의 부적정

아래 [표 16] “특약 주요 예시 및 문제점”에서와 같이, 특약의 내용과 양식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식별 및 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이행가능 여부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 등에 대해 지원업체와 충분한 협의절차가 결여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특약상 이행 완료기한이 임의로 설정될 뿐 아니라, 즉시 원리금 상환 및 일방적 기한의 이익상실 등 특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 내용이 과도해 오히려 특약의 이행 및 회사의 이행 의지를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 [표 16] 특약 주요 예시 및 문제점 >

구분	주요 예시	문제점																								
리픽싱 조건	<p>① 제1조(전환가격의 조정) 회사의 '23년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상의 매출액이 4,772백만원 (회사제시 매출액 9,545백만원의 50%) 미만일 경우, 본 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주당 580,500원 (최초 투자 단가 645,000원의 90%)로 조정한다.</p> <p>② 제1조(전환가격의 조정) 하기 2020년 말 연결 기준 매출 또는 LiveAccount 수 실적 연동하여 두 개 조건 중 보다 높은 실적을 낸 Pre-Money Valuation을 기준으로 전환가격 조정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022년</th> <th>Pre-Money Valuation (순환유선 Pool Full-Diluted)</th> <th>주식 전환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매출</td> <td>100억이상</td> <td>900억</td> <td>유지 (297,600원)</td> </tr> <tr> <td>80~100억미만</td> <td>800억</td> <td>264,550원</td> </tr> <tr> <td>80억 미만</td> <td>700억</td> <td>231,500원</td> </tr> <tr> <td rowspan="3">Live Account 수</td> <td>5,500만개 이상</td> <td>900억</td> <td>유지 (297,600원)</td> </tr> <tr> <td>5,000만~5,500만개 미만</td> <td>800억</td> <td>264,550원</td> </tr> <tr> <td>5,000만개 미만</td> <td>700억</td> <td>231,500원</td> </tr> </tbody> </table> <p>③ 제1조(전환가격의 조정) 본 계약 인수조건에 따른 전환가격은 본 건 전환사채인수 이후 2021년 3월 31일까지 '중진공'이 인정하는 후행 투자자의 전환가격과 동일하게 조정된다.</p>	구분	2022년	Pre-Money Valuation (순환유선 Pool Full-Diluted)	주식 전환가	매출	100억이상	900억	유지 (297,600원)	80~100억미만	800억	264,550원	80억 미만	700억	231,500원	Live Account 수	5,500만개 이상	900억	유지 (297,600원)	5,000만~5,500만개 미만	800억	264,550원	5,000만개 미만	700억	231,500원	<p>· 특약 내용과 양식 통일성이 결여되어 식별 및 관리가 어려움</p>
구분	2022년	Pre-Money Valuation (순환유선 Pool Full-Diluted)	주식 전환가																							
매출	100억이상	900억	유지 (297,600원)																							
	80~100억미만	800억	264,550원																							
	80억 미만	700억	231,500원																							
Live Account 수	5,500만개 이상	900억	유지 (297,600원)																							
	5,000만~5,500만개 미만	800억	264,550원																							
	5,000만개 미만	700억	231,500원																							
이해관계인 대여금회수	<p>① 제1조(대여금의 회수) "회사"는 2020년 10월 28일 현재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375백만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모두 회수한다.</p> <p>② 제2조(대여금의 회수) "회사"는 2020년 6월말 기준 대표이사 대여금 1,026,352,954원을 다음의 상환 계획에 따라 전액 회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상환 계획】</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0.12.31</th> <th>'21.12.31</th> <th>'22.12.31</th> <th>'23.12.31</th> </tr> </thead> <tbody> <tr> <td>상환액</td> <td>226,352,954</td> <td>300,000,000</td> <td>200,000,000</td> <td>300,000,000</td> </tr> <tr> <td>잔액</td> <td>800,000,000</td> <td>500,000,000</td> <td>300,000,00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20.12.31	'21.12.31	'22.12.31	'23.12.31	상환액	226,352,954	300,000,000	200,000,000	300,000,000	잔액	800,000,000	500,000,000	300,000,000	-	<p>· 특약 이행가능여부 및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대한 검토 부족</p> <p>· 특약상 이행완료 기한이 임의설정되고,</p>									
구분	'20.12.31	'21.12.31	'22.12.31	'23.12.31																						
상환액	226,352,954	300,000,000	200,000,000	300,000,000																						
잔액	800,000,000	500,000,000	300,000,000	-																						
관계사 정리	<p>① 제1조(관계회사) "회사"는 2020년 04월 30일까지 관계회사인 (주)*****의 주식 전부를 취득완료(지분율 100%) 혹은 합병완료 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까지 유지한다.</p> <p>② 제1조(인수합병에 관한 사항) "회사"는 2021년 12월까지 (주)*** 또는 *****과 합병한다</p>	<p>· 특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내용이 즉시 원리금 상환기한 이익 상실로 제재내용이 과도해 특약의 이행 및 회사의 이행 의지를 약화시킴</p>																								
이해관계인 가수금 출자전환	<p>① 제1조(출자전환) "회사"와 "대표이사(****)"는 사실상 현재의 차입금 중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50백만원을 '20.12월말 까지 주당 4,000원으로 보통주로 출자전환함을 동의하고 이행 완료한다.</p> <p>② 제1조(유상증자) 회사는 전환사채 인수전까지 48,450천원을 9,690주 액면가 5000 원에 유상증자를 실시 한다</p>																									

대표자 지분인수 의무	<p>① 성장공유형 대출의 전환권 행사 이전 인수합병 기업 사업의 매각 또는 최대주주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환사채 잔액의 2배로 회사 또는 대표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3조(주식매수청구권)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중진공"로부터 제19조의 서면 요구를 받고 1개월 이내에 "회사" 발행 보통주식에 설정된 근질권을 해제하지 않는 경우, "중진공"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본건 종류주식을 본질가치의 200%의 가격으로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p>
-------------	--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우선주 존속기간 및 배당기준, 사전동의권, 주식매수선택권과 같은 전환사채 인수계약의 본 계약 사항을 특약으로 별도 설정·관리(61)하여 행정낭비를 초래하였다.

나. 특약에 대한 사후관리의 부적정

⑥2)와 #63) 사례와 같이, 특약에 정한 이행기간이 도과한 후 해당 특약을 변경·삭제하여 특약의 효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있고, 특약사항 이행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실시(64)하고 있으나, 점검 당시 이미 이행기한을 초과한 사례(65)가 발생하는 등 특약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편, 아래 [표 17] "사후관리 유형별 관리 주체 및 내용"에서와 같이 특약을

- 61) 운영요령 개정 시행일('21.5.4) 전에 신청·접수한 기업의 본 계약서 개정사항을 특약으로 설정하였으나, 별도 특약을 설정하지 않고 개정된 본 계약서로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 62) ① 전환사채인수계약 당시('19년 3월) 130억원 초과 전기트럭 납품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특약 설정 → ②@는 특약상 만기인 '19.10.31까지 전기트럭 납품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로부터 1개월10일 가량 지난 12.11일 특약상 이행기간을 '20.3.31로 연장(1차 연장) → ③ 1차 연장 만기인 '20.3.31로부터 1개월15일 가량 지난 5.15일 특약상 이행기간을 '20.12.31로 연장(2차 연장) → ④특약상 만기인 '20.12.31로부터 5개월14일이 지난 '21.5.14 투융자심의위원회 개최 후 위 특약 조항을 삭제(3차 특약 삭제)
- 63) ① 전환사채인수계약 당시('17년 2월) '17.12.31까지 관계회사 (주) & 청산, '18.12.31까지 (주)* 흡수합병 특약 설정 → ② '17년 11월에 '18.12.31까지 (주)과 (주)&를 흡수합병하기로 특약 개정(1차 연장) → ③ '18년 5월 (주)*은 합병하였으나, 특약상 만기인 '18.12.31까지 (주)&를 합병하는 특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로부터 3개월 15일이 지난 '19.4.16일 특약상 이행기간을 '19.12.31까지로 연장(2차 연장) → ④ '19.12.11 투융자 복합금융 심의위원회 개최 후 위 특약 조항을 삭제(3차 특약 삭제)
- 64) 운영요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성장융합금융체는 각 지역본·지부에 관한 성장공유형 대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현황조사를 공문으로 요청하여 특약사항 이행여부 및 후속조치 결과 등을 회신 받고 있다.
- 65) (주)H 특약사항(해위자회사 대여금 상환) 완료기한이 '21년 12월이나, 이행여부 점검은 '22년 4월로 기한 초과하는 등 '22년말 기준 특약 완료기한을 초과한 특약 미달성 계약이 7건

포함한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대한 사후관리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사후관리 공백이 발생할 우려⁶⁶⁾가 있다.

< [표 17] 사후관리 유형별 관리 주체 및 내용 >

구분		지역본부	본사
대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사채 인수계약 체결 ■ 대출금 지급 및 수납 ■ 연체관리 ■ 채권보전조치 ■ 기한의 이익상실(채무불이행 사유) ■ 변경약정(만기연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연장, 약정해지 이자산정(상환할 증금), 원장변경 등
투자자산 관리	일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이행관리 및 후속조치 ■ 사전동의 사항 검토 ■ 임의상환희망 기업 투심위 부의 ■ 기업 정기현황 조사 및 사후관리 ■ 회계감사보고서 징구 및 검토 ■ 주주총회 참석(주식보유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현황조사 및 사후관리 요청 및 관리 ■ 사전동의, 분쟁관련 자문 및 세부검토 ■ 질의 응답 및 지역본·지부 직원교육
	중요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산의 매각 등 처분 의사결정 ■ 기존 계약의 해지 및 주주간 계약서 작성 등 계약의 변경 ■ 계약위반 기업 기한의 이익 상실 검토 ■ 위약벌금 규모산정 ■ 전환권 검토를 통한 출자 전환 ■ 상환권 검토를 통한 대출금 회수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자 의견】

중진공은 특약의 내용과 양식의 통일성이 부족하여 식별 및 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 내용이 과도하여 지원업체의 이행의지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대해 공동 투자자 간 특약 공유 등 투자적 특성으로 표준화가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나, 특약 설정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계약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원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특약 완료

기한을 설정하고 미이행 시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등 특약의 이행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고, 전환사채 인수 본 계약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특약으로 별도 설정·관리하여 행정낭비를 초래하였다는 특약 설정의 부적정 지적에 대해 본 계약서상 통상적 계약조항의 수정을 특약에 의하지 않고 본 계약서 개정으로 처리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특약 이행기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사후관리 주체가 이원화되어 관리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연 1회 실시 중인 특약이행 점검주기를 연 2회로 확대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본사와 지역본·지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후관리 공백 발생 우려를 방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전환사채 인수계약의 특약 설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시고, 특약 사항 이행점검, 사후관리 주체의 일원화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66) 실제 @ 전환사채인수계약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 특약상 이행기간 연장 요청 공문(EM-00-0000, 2020.3.31)이 다른 공문과 달리 지역본·지부에 접수되지 않고, 바로 성장융합금융처로 접수되어 사후관리의 공백 발생

1. 업무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은 「여비규정」에 따라 임직원의 출장을 시내출장, 시외당일귀임출장, 국내출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내출장은 근무지로부터 2km 이상 40km 이내의 시내지역에 출장하는 경우로 여비 2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시외당일귀임출장은 근무지로부터 2km 이상 40km 이내의 시외지역에 출장할 경우로 여비 3만원을 지급하고, 수행업무의 성격과 교통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비로 필요경비를 충당할 수 없거나 출장거리가 근무지로부터 왕복 80km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당일귀임여비⁶⁷⁾를 지급한다. 국내출장은 시내출장, 시외당일귀임출장 외의 출장으로 「여비규정」에 따라 아래 [표 18]과 같이 운임 및 체재비를 지급하고 있다.

< [표 18] 중진공 출장운임 및 체재비 >

(단위 원)

직 급	운임				체재비		
	항공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식비	숙박료
임원	Business Class급	KTX 특실	특등	정액	17,000	45,000	실비
1급	Economy Class급	KTX 보통	1등	"	11,000	27,000	50,000
2급	"	"	"	"	10,000	26,000	50,000
3급 이하	"	"	"	"	9,000	25,000	50,000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67) 「여비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특별당일귀임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 중진공 내부문서 “특별당일귀임출장 실비 지급기준”(11.12.21)에 따라 일비(임원 20,000원, 1급 14,000원, 2급 13,000원, 3급 이하 12,000원)와 교통비(자가차량 이용시, km당 320원을 곱한금액)를 지급

2. 법령 등 관련 근거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숙박비와 운임에 대한 여비 실비정산제에 따라 반드시 출장 후 증거서류⁶⁸⁾를 확인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기재부)」에 따르면 국내·외 출장은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출장기간 및 출장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 여비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조하여 마련하되 임직원의 직급별 세부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공무원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권익위 의결 제2014-437호, ‘14.10.27)’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공무원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에는 공무원여행과 관련된 기관별 여비지급 기준의 다양성, 과도 또는 과소지급의 배제를 위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면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없는 각종 추가 지급규정은 폐지토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국내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고 제10조부터 제13조에 따른 여비기준은 아래 [표 19]와 같다.

< [표 19] 국내여비 지급표(공무원 여비규정) >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원	실비	25,000원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원	실비 ⁶⁹⁾	20,000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68)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69)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기타 50,000

아울러 중진공 「임직원복지규정 시행요령」 제14조70)에 따르면 차량보조비를 지급 받은 임직원은 당일귀임출장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진공은 출장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실제 출장에 소요된 비용을 확인하여 실제 소요비용보다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차량보조비와 당일귀임출장여비가 중복되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에 없는 추가 지급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가. 실비정산없이 정액여비 지급

그런데 중진공은 출장자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는지, 숙박시설을 이용하였는지, 얼마의 경비를 지출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는 정산절차 없이 여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22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3개월간 1,319건의 2일 이상 출장내역을 확인한 결과, 숙박비가 지급된 출장은 총 713건이며 이중 출장자가 숙박을 하지 않았거나 답변하지 않은 사례는 114건이고, 숙박을 하였다고 답하였으나 숙박시설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례는 503건인바, 숙박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례는 96건에 불과하여 3개월간 41,950천 원의 숙박비가 숙박 여부 확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기간 교통비가 지급된 출장 1,252건에 대해서도 실제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는지,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었는지 중진공은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나. 출장기간 인정기준 부적정

이번 감사기간 중 22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총 10개월간 4,371건의 출장내역을 확인한 결과, 2일 이상 출장내역은 4,083건이며 구체적 사례를 보면 E

70) 「임직원복지규정 시행요령」 제14조(지급조건) 차량보조비는 다음 각 호의 제한 조건하에서 지급한다.
3. 당일귀임출장비(단, 특별당일귀임여비는 중복지급 가능)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처 JJJ(3급)이 “중소기업 ESG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 참석”을 목적으로 ‘22.2.11(금)부터 다음 날인 2.12(토)까지 서울지역으로 출장한 데 대해 일비 18,000원(2일분), 식비 50,000원(2일분)을 지급하였고, S처 ^^이 “수출바우처사업 수행서비스 실태점검” 목적으로 ‘22.8.5(금)부터 다음날 인 8.6(토)까지 서울지역으로 출장한 데 대해 일비 18,000원(2일분), 식비 50,000원(2일분)을 지급하는 등71) 중진공은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출장자가 출장신청 시 기재한 출장기간을 그대로 인정72)하여 여비를 지급하고 있었다.

아울러 3개월간(‘22.8월~10월) 출장내역을 추가분석한 결과 1박 2일(금~토요일) 출장 219건 중 실제 2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장73)을 제외하고 149건의 출장에 대해 토요일을 출장일로 인정하여 출장여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74)

다. 특별당일귀임출장과 국내(시외)출장 기준 불명확

중진공은 「여비규정」 제15조 및 “특별당일귀임출장 실비 지급기준(‘11.12.21)”에 따라 왕복 80km를 초과하는 당일귀임 출장에 대해 특별당일귀임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특별당일귀임출장여비와 국내(시외)출장여비는 [표 20]과 같다.

< [표 20] 자가차량 이용시 특별당일귀임출장과 국내출장 여비 비교 >

구 분		특별당일귀임출장	국내출장	비고
일 비	임 원	20,000원	17,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귀임출장: km당 320원을 곱한 금액 ■ 국내출장: 버스요금 적용
	1 급	14,000원	11,000원	
	2 급	13,000원	10,000원	
	3급이하	12,000원	9,000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71) (1일 출장) 133건, 15,217천원, (2일 출장) 923건, 177,223천원, (3일 이상) 396건, 110,627천원, 2일 출장 중 금~토 출장은 219건, 38,276천원

72) 중진공 복무담당자는 당일 업무시간 내 복귀가 어려운 원거리 출장의 경우 출장일수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답변

73) 교육, 워크숍 등이며, 교육의 경우 1일 과정이면서 이동일수를 부서장 제량으로 추가 부여한 경우는 제외

74) 2일 출장이라도 출장지가 거주지와 동일한 경우 숙박비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중진공은 특별당일귀임출장시 자가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출장거리(km)당 320원⁷⁵⁾을 곱하여 지급하고 국내(시외)출장은 버스요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양 출장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일비를 달리 지급할 타당한 근거를 찾아 보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출장자는 당일 귀임하여 특별당일귀임출장여비를 지급 받을 것인지, 국내(시외)출장으로 “3-①, ②”항과 같이 출장기간을 1일 더 추가하여 정액여비를 지급받을 것인지를 비교하여 유리한 출장을 선택하게 되고, 출장자의 선택에 따라 출장여비의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특별당일귀임출장의 교통비는 자가차량 이용시 km당 320원을 곱하여 지급하는데 중진공은 “3-①항”과 같이 특별당일귀임출장자 자가차량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3-①, ②, ③”항과 같이 숙박 사실확인 없이 숙박비를 지급하고, 출장기간을 과도하게 인정하였으며, 출장자의 선택에 따라 출장여비가 달리 지급되는 등 중진공의 재무건전성과 집행기준의 명확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라. 차량보조비와 당일귀임출장비 중복 지급

중진공 「임직원복지규정 시행요령」에 따라 차량보조비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소유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수행에 직접 사용함을 전제로 하여 당일귀임출장여비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하에서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차량보조비를 지급받는 임직원은 당일귀임출장시 시내출장여비 또는 시외당일귀임출장여비를 청구하지 않아야 하며, 정산 업무담당자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량보조비와 당일귀임출장여비가 중복하여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5) 차량가격(2,000만원)과 유지비용(1,5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예상주행거리(200,000km)로 나눈 km당 산정비용(175원)과 km당 유류비(162원)를 합한 337원을 기준으로 노조와 협의하여 320원으로 결정, 이에 반해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휘발유 차량의 경우 km당 약 135원으로 산정('22년 진주지역 보통휘발유 평균가격 1,796.05원, 연비 13.3km/ℓ 적용)

그런데 감사기간('22.12.12~12.28) 중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차량보조비를 지급받는 임직원에 대한 당일귀임출장여비 지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 21]과 같이 '17년 9명, '18년 7명, '19년 6명, '20년 9명, '21년 13명, 22년 8명이 차량보조비와 당일귀임출장여비를 중복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21] 차량보조비와 당일귀임출장여비 중복지급 현황 >

(단위: 명, 건, 원)

연도	인원수	출장건수	지급 출장비
2017년	9	10	220,000
2018년	7	22	620,000
2019년	6	18	430,000
2020년	9	31	750,000
2021년	13	22	470,000
2022년	8	11	230,000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중진공은 특별당일귀임출장의 경우 왕복 80km 이상, 500km 미만이며 당일 복귀를 기준으로 자가차량을 이용할 경우 활용하고 있고, 왕복 500km를 초과할 경우에는 당일 복귀가 가능하더라도 무박출장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한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넓은 지역에 출장건수가 많은 업무의 특성 때문에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특별당일귀임출장의 기준을 왕복 500km 미만으로 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없고 왕복 500k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다수의 기업을 방문하는 경우가 아닌 예도 특별당일귀임출장여비를 지급한 사례⁷⁶⁾가 있으며, 왕복 500km 미만이거나

76) 충북북부지부-진주 본사('11.1.18. 교육참석, 편도 251km), 글로벌리더십연수원-일산킨텍스('22.8.31. 전시회 참석, 편도 274km), 그 외 업무협의, 설명회, 회의참석 등

기업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국내(시외)출장여비를 지급한 사례⁷⁷⁾가 있어 출장종류가 주로 담당자의 당일귀임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왕복 500km미만, 다수의 기업방문 시에만 특별당일귀임출장으로 처리한다는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중진공은 실비정산, 출장기간 및 기준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공무원 여비규정」에서는 시외출장 시 자가차량을 이용할 경우 철도 또는 버스 운임으로 지급하되 자가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⁷⁸⁾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료비,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장의 종류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도 자가차량 사용 등 출장사실에 맞게 시외출장여비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출장관련 제도개선 시 준용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 ① 출장여비가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과도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출장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 ②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실비정산제를 도입하고 특별당일귀임출장을 국내(시외)출장과 통합하는 등 출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③ 차량보조비를 지급받는 직원에게 중복지급된 당일귀임출장여비는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77) 진주-오송('22.3.24.~25. 프로그램 실패조사, 22.10.7.~8. 프로그램 실패조사, 편도 220km)

78) ①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② 출장 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③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⑤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⑥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별표 2]

< 차량보조비 수령 임직원 당일귀임출장비 지급 세부 내역 >

(단위: 원)

연도	이름	소속	출장일	출장목적	출장비
2017		충청강원권경영지원처	2017-12-15	18년 용자교육-00대(대전)	20,000
		서울지역본부	2017-06-16	소비재수출대전상담(강남구)	20,000
		성과보상기획처	2017-09-26	사회공헌활동	20,000
		중소벤처기업연수원	2017-06-30	타기관 연수 업무 협의(00조합)	30,000
		리스크준법처	2017-06-27	법원변론기일 참석-000000(주)(진주시원)	20,000
		정보관리실	2017-06-19	차세대업무협의(당산 00000)	20,000
			2017-06-20	차세대업무협의(당산 00000)	20,000
		전남지역본부	2017-06-26	해외진출, 온라인마케팅 수요발굴(0000/목포)	30,000
		창업지원처	2017-10-31	사회공헌활동	20,000
	중소벤처기업연수원	2017-03-14	연수물품구입(000이마트)	20,000	
2018		경기지역본부	2018-07-16	(출장지:지구자동화(화성)),멘토링	30,000
			2018-07-17	(출장지:000(안산)),상환유예 실태조사	30,000
			2018-07-18	(출장지:00000(부)),멘토링	30,000
			2018-07-19	(출장지:00000(광명)),멘토링	30,000
			2018-07-20	(출장지:0000000연구소(군포)),멘토링	30,000
			2018-07-24	(출장지:00000(화성)),멘토링	30,000
			2018-07-25	(출장지:0000000(용인)),멘토링	30,000
		대구경북권경영지원처	2018-01-18	청년창업자금 심의위원회 참석	30,000
			2018-01-24	공모형진단 사업 등 협의	20,000
			2018-01-29	공모형진단 협의 및 기업인력레소센터 홍보	30,000
		경기서부지부	2018-06-18	조기경보기업(연체기업) 실태조사	30,000
			2018-06-19	소공인특화자금 관련 장기연체기업 실태조사	20,000
			2018-06-20	조기경보(경보등급)기업 현장 실태조사	20,000
			2018-06-21	조기경보(연체)기업 실태조사	30,000
			2018-06-25	조기경보기업 실태조사, 취업지원 관련 업무협의	30,000
			2018-06-26	조기경보기업 실태조사, 취업지원 관련 업무협의	30,000
		중소벤처기업연수원	2018-09-04	(출장지:중소기업유통센터(정보관리실)),연수 및 이력관리 시스템 관련 업무협의	30,000
			2018-09-13	(출장지:중소기업유통센터),(오전) 해외직판처 용역사업 평가참여 (오후) 정보보안 및 개인(신용)정보보호 부서 담당자 교육 참석	30,000
	2018-09-14		(출장지:서울(코엑스)),이러닝코리아 참석(이러닝 트렌드 파악 및 LMS 개발업체 섭외)	30,000	

		대구경북연수원	2018-03-29	비즈니스 라운지 설치관련 벤치마킹	30,000
		경기동부지부	2018-05-03	긴급경안(화재피해기업) 실태조사	30,000
		기업금융처	2018-02-06	전통시장가날 캠페인 참석-진주유등시장(진주)	20,000
2019	전북지역본부		2019-06-18	(출장지:(유)0000(익산)),수출금융 정책자금 신청기업 실태조사	30,000
			2019-06-19	(출장지:(주)0000(전주)),정책자금 현장평가 실태조사	20,000
			2019-06-20	(출장지:전주시청(중소기업과)),기업애로 원스톱지원단 간담회 참석	20,000
			2019-06-24	(출장지:(주)0000(김제)),신시장진출자금 현장평가 실태조사	30,000
			2019-06-27	(출장지:김제시청),찾아가는 수출활력촉진단 맞춤형 상담회 참가	30,000
		기업인력지원처	2019-10-16	(출장지: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진주),고교생 대상 중소기업 바로알기(인식개선) 관련 업무협의	20,000
	서울북부지부		2019-09-16	(출장지:(주)0000, (주)000000),기업평가 및 현장 실태조사	20,000
			2019-09-17	(출장지:(주)00000 건축현장(경기 남양주시)),토지 매입 및 건축현장 확인	30,000
			2019-09-19	(출장지:(주)0000),기업평가 및 실태조사	20,000
			2019-09-20	(출장지:(주)0000),취업박람회 안내 및 정책자금 수요 발굴	20,000
			2019-09-30	(출장지:000, 00000000협동조합),기업평가 및 실태조사	20,000
			2019-10-02	(출장지:0000000000, (주)000000),기업평가 및 현장 실태조사	20,000
			2019-10-04	(출장지:백마부대(경기도 일산)),일자리 박람회 행사 준비 및 참석	30,000
			2019-10-07	(출장지:목동 스마트워크센터),전담반 업무 관련 사전회의 참석	20,000
			호남연수원	2019-04-24	(출장지:제주장사 동창회 설립관련 협의),0000
부산경남연수원		2019-07-03	(출장지:부산 청창사),출입식 행사 관련 점검 회의 참석	30,000	
		2019-07-10	(출장지: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부산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간담회	30,000	
	리스크준법실	2019-07-22	(출장지:연암공과대학교, 경상대학교),용역기간 선정위원회 업무협의	20,000	
2020	서울지역본부		2020-01-07	(출장지:서울지역본부),서울지역본부 전체회의 참석	20,000
			2020-01-15	(출장지:서울엠비즈니스센터외),10기 청년창업사관학교 홍보 및 업무협의	20,000
		서울지역본부	2020-11-16	(출장지:목동 스마트워크센터),제5차 벤처투자연구회 참석	20,000
	전북지역본부		2020-01-20	(출장지:00000(전주), 0000(완주)),기업인력애로센터 안내 및 기업진단평가	30,000
			2020-01-21	(출장지:00, (주)에00000(완주)),사업전환홍보 및 기업실태조사	30,000
			2020-01-30	(출장지:(유)000000(익산) 및 000000(익산)),기업인력애로센터 안내 및 기업진단평가	30,000
			2020-01-31	(출장지:(유)0000(김제) 및 0000000(김제)),기업인력애로센터 안내 및 기업진단평가	30,000
			2020-02-05	(출장지:(주)000(전주) 및 (주)000(완주)),기업진단 및 실태조사	30,000
		2020-02-07	(출장지:(주)000 및 (주)0(완주)),기업진단 및 실태조사	30,000	

			2020-02-11	(출장지: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입학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20,000	
			2020-02-13	(출장지:00000(전주) 및 0000(완주)),기업진단 및 실태조사	30,000	
			2020-02-18	(출장지:(주)0000000000 및 (주)00000(전주)),기업진단 및 실태조사	20,000	
			2020-02-19	(출장지: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입학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20,000	
			2020-02-20	(출장지:(주)0000(익산)),기업진단 및 실태조사	30,000	
	경기서부지부		2020-01-17	(출장지:광명전통시장),중기부 합동 전통시장 방문행사 참가	30,000	
			2020-01-23	(출장지:(주)0000(시흥시)),소액성실상환 신청에 따른 점검	30,000	
	창업지원처		2020-07-14	(출장지:진주성),합동청렴 교육참석	20,000	
	성과관리실		2020-07-28	(출장지:시내(0000),기관평가 타기관 우수사례집 수령	20,000	
부산경남권경영지원처			2020-11-16	(출장지:김해상방시장 및 삼방동 우체국),채권신고 등기 발송 및 다과구매	20,000	
			2020-11-18	(출장지:창원우체국),채권 상각 관련 박스구입 및 미스터푸드 회수관련 등기발송	30,000	
			2020-11-23	(출장지:다이스 및 장유우체국),회생채권신고(채권자목록) 및 대내 업무용 비품 구입	20,000	
			2020-11-26	(출장지:장유우체국),회생/채권파산신고 및 분할상환 안내 등기 발송	20,000	
			2020-12-03	(출장지:장유우체국),회생채권신고 및 배당신고 등 채권관리업무 관련 등기발송	20,000	
			2020-12-09	(출장지:장유우체국 및 드림디포(장유점)),회생, 파산 채권신고 및 사무실 비품 구입	20,000	
			2020-12-10	(출장지:장유우체국),파산계좌신고 및 회생채권신고 등기 발송	20,000	
			2020-12-15	(출장지:장유우체국 및 드림디포(주촌점)),배당채권 및 회생/파산채권 신고 등기발송 및 대내외업무용 다과구매	20,000	
	전북지역본부			2020-08-31	(출장지:00000),기업진단 및 실태조사	20,000
				2020-09-08	(출장지:(주)000000(전주, 남원)),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실태조사	30,000
			2020-09-14	(출장지:00000(완주)),실태조사 및 진단 업무 설명	30,000	
			2020-09-15	(출장지:전주대학교) 탄소융합공학과,중소기업운영위원회(박사) 참석	20,000	
	진단기술처		2020-03-04	(출장지:경상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용역 관련 적정사업기간 선정 사전협의 등	20,000	
2021	경북지역본부		2021-06-16	(출장지:(주)00000(구미)),무역사절단 사후관리 및 업무협의	20,000	
			2021-06-21	(출장지:0000(주)(칠곡)),경북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업무협의	30,000	
		글로벌리더십연수원		2021-01-27	(출장지:태백우체국),연수관련 우편발송	20,000
	대구지역본부		2021-06-16	(출장지: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안내 및 수행기관 운영현황 점검	20,000	
			2021-06-18	(출장지:기존테크),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안내 등	20,000	
		대전지역본부		2021-06-18	(출장지:대덕분석기술연구원),탄소중립 경영혁신 바꾸어 사업 안내 및 기성확인	20,000
	경기북부지부		2021-08-12	(출장지:(주)0000, 0000000(파주)),기업인력애로센터 홍보 및 자금실사 등	30,000	
	경남지역본부		2021-06-16	(출장지:0000(창원)),기업 실태조사	20,000	
	강원영동지부		2021-03-26	(출장지:0000(주)),자금실태조사	20,000	

		2021-03-31	(출장지:000000(주)(양양), (주)00000(강릉),기업진단 사업안내 및 자금실태조사	30,000	
글로벌리더십연수원		2020-12-21	(출장지:태백시내 동아서점 등), 연수사업 물품대금 지급 등	20,000	
		2020-12-23	(출장지:태백시내 국립공원공단, 태백역 등),협업연수 관련 업무협의	20,000	
		2021-01-07	(출장지:(태백시)00000000),홍보달력 우편발송 비용 지급 등	20,000	
		2021-01-13	(출장지:태백시청),연수원 홍보(연수 홍보달력 전달 등)	20,000	
		2021-01-15	(출장지:태백 우체국, 이마트 등),기속사 소모품 구매 및 연수 홍보책자 등 발송	20,000	
인천지역본부		2021-06-16	(출장지:(주)0000(인천 남동), (주)0000(인천 남동),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현장평가	20,000	
성과관리실		2021-09-24	(출장지:경상대학교),기관평가 관련 업무협의	20,000	
		2021-09-27	(출장지:경상대학교(가좌동)),기관평가 관련 업무협의	20,000	
호남연수원		2021-06-16	(출장지:무등산국립공원),사회공헌활동 참여	20,000	
		2021-06-17	(출장지:(주)0000, (주)0000000 (주)00000 등),스마트공장 제작자 심화과정 홍보 등	20,000	
울산지역본부		2021-06-17	(출장지:0000(주)),자금 실태조사	20,000	
충북북부지부		2021-06-22	(출장지:(주)0000000(충주)),정책지원사업 수요발굴	20,000	
2022	인천지역본부		2022-06-16	(출장지:0000(인천 연수구)),사회경제적기업 수요 발굴	20,000
	부산동부지부		2022-06-16	(출장지:0000(주)),정책자금 현장실태조사	20,000
			2022-06-20	(출장지:(주)0000000, (주)000000000),정책자금 현장실태조사	20,000
	수도권경영지원처		2022-06-24	(출장지:꿈나무들의 동지 지역아동센터(양천구)),사회공헌활동	20,000
	부산경남연수원		2022-06-24	(출장지:(주)0000_부산),스마트공장 기업현장 맞춤형 연수 사전진단 및 추진계획 협의 등	30,000
	부산지역본부		2022-06-27	(출장지:(주)0000, 0000000(주)),간담회 참석 관련 업무협의	20,000
			2022-06-28	(출장지:(주)000000000),친환경선박 간담회 개최 관련 현장준비 등	20,000
	광주지역본부		2022-06-20	(출장지:광주지역본부),수출바우처 및 동남아온라인사절단 업무협의	20,000
	동부권경영지원처		2022-06-08	(출장지:안심종합사회복지관),부산 그린사회공헌활동 참여	20,000
			2022-06-09	(출장지:대구지역본부),찾아가는 사택제도 설명회 참석	20,000
서부권경영지원처		2022-07-05	(출장지:대전청년창업사관학교),K-에비유니콘기업 및 창사업주기업 액셀러레이팅 행사 협의	20,000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III-12 복무 관리 부적정

1. 업무 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은 복무규정 제9조(근무상황관리)에 따른 직원의 조퇴, 외출과 동 규정 제14조(휴가의 종류)에 따라 직원의 유급휴가 중 공가⁷⁹⁾를 운영하고 있다.

2. 관련 규정 등 근거

< 조퇴, 외출 제도 운영 관련 >

중진공 「복무규정」 제9조(근무상황관리)에 따르면 직원이 조퇴하거나 외출할 때에는 사전근무상황기록부에 기입하고 감독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8조(근무시간) 따르면 직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1일 8시간)로 하고 있으며, 「윤리강령」 제11조(공·사 구분)에 따르면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가 제도 운영 관련 >

또한 「복무규정」 제17조(공가) 제5호에 따르면 직원이 사회공헌활동에 참가할 때에는 연간 1일 이내에 공가(이하 “사회공헌 공가”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항 제6호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공가(이하 “건강검진 공가”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⁸⁰⁾하고 있다.

79) 중진공 「복무규정」 제14조(휴가의 종류) 제1항 직원의 유급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근로시간저축휴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80) 중진공 「복무규정」 제17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한다.

5. 헌혈 등 사회공헌활동에 참가할 때(연간 1일 이내)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가. 조퇴, 외출 제도 운영 부적정

중진공은 직원이 필요시 근무상황기록부에 시간, 용무, 행선지 등을 기입하고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조퇴하거나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⁸¹⁾

① 근무상황(조퇴, 외출, 출장)을 구분하여 관리 필요

중진공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임직원의 근무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조퇴·외출의 경우 ‘외출부 신청관리’ 항목을 통해서 관리⁸²⁾하고 있다.

중진공은 임직원의 근무상황을 관리함에 있어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리 예규」 제2장(근무상황 관리)⁸³⁾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근무상황의 목적과 사유에 따라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우에는 출장으로, 질병 및 개인사유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조퇴 또는 외출로 근무상황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감사기간(‘22.12.12~12.28) 중 2022년 중진공 임직원의 ‘외출부 신청관리’ 현황(‘22.12.20 현재)을 살펴본 결과, 중진공 임직원은 아래 [표 22]과 같이 총 6,667건 11,327시간의 외출을 사용하였으며, 외출을 신청한 목적과 사유에 따라 구분하면 직무 관련으로 964건 1,498.5시간, 사적용무 관련으로 5,703건 9,828.5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중진공은 임직원의 근무상황을 관리함에 있어서 외출의 사용 목적 및 사유에 따라 출장과 조퇴·외출에 대한 구분이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81) 복무규정 제9조 ② 질병 기타 사유로 조퇴하거나 근무시간중에 외출할 때에는 사전근무상황기록부에 시간·용무·행선지 등을 기입하고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2) 직원은 외출, 조퇴 사유 발생시 통합정보시스템의 경영지원-근태관리-외출부 신청관리 항목을 통해서 외출일시, 목적지, 외출목적 등을 작성하여 부서장 결제를 받아 외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퇴와 외출에 대한 구분없이 외출부로 관리하고 있음.

83)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리 예규」 제2장(근무상황 관리)에서는 ‘조퇴란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외출이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 예규 제6장(출장)에서는 ‘출장이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 [표 22] 2022년 임직원 외출부 현황(‘22.12.20. 기준) >

구분	사용건수	사용시간	목적 및 사유
직무관련	964건	1,498.5시간	물품구매, 부서업무, 우편발송, 코로나19검사 등
사적용무	5,703건	9,828.5시간	은행이용, 관공서 서류발급, 차량수리·관리, 병원 진료, 주택관리 등
합계	6,667건	11,327시간	-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② 외출, 조퇴 사용 기준 마련 등 제도 정비 필요

또한 중진공은 근무상황을 관리함에 있어서 임직원이 「복무규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임직원은 「윤리강령」 제11조에 따라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상기 [표 22] 중진공 임직원의 외출부 현황에서 근무시간 내에 질병 치료, 개인 사유 등 사적인 용무를 위해서 외출한 5,703건 중 사용건수 및 시간이 많은 임직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용 목적 및 사유 등에 대한 살펴본 결과, 서울 지역본부 000 00의 경우에는 총 48건, 91시간 10분을 사용하였으며, 목디스크 치료 등을 위한 병원진료(84시간 40분), 은행 방문(4시간 30분), 자녀학교 방문(2시간)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구경북연수원 000 00의 경우에는 총 31건, 62시간 45분을 사용하였으며, 병원진료(59시간 15분), 차량정비(3시간 30분)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연수원 000 00의 경우에는 총 30건, 60시간을 사용하였으며, 자녀 병원진료 및 등원(22시간 30분), 본인 병원진료(13시간 30분), 은행 방문(9시간), 차량·전자제품 정비(9시간), 서류발급 등 관공서 방문(6시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2022.1.1.~12.20기간 동안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를 위해서 누계 8시간 이상 외출을 사용한 임직원이 451명인 것으로 확인⁸⁴⁾되었다.

중진공은 상기 사례와 같이 임직원이 사적인 용무를 위해 사용한 외출에 대하여 사용기준, 사용시간 등에 대한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어, 외출제도가 임직원이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를 위한 목적으로 번번히 활용되고,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시간을 합리적인 기준없이 단축하게 하는 등 근무상황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공가 제도 운영 부적정

① 사회공헌 공가 운영 부적정

중진공은 2011.12.8.부터 사회공헌 공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헌혈 등 사회공헌활동에 참가할 때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회적공헌 공가를 사용하고 있다.

중진공 직원은 「복무규정」 제17조 제5호에 따라 필요시 사회공헌 공가를 연간 1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부서장은 복무관리 책임자로서 소속직원에게 대한 복무관련 규정 준수 여부, 복무상황 등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7년부터 2022년 10월 기간 동안 중진공 임직원들의 사회공헌 공가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복무규정」에 정한 연간 1일을 초과하여 2일을 사용한 임직원이 [표 23]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23] 사회공헌 공가 초과 사용 현황('17~'22.10월) >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원	376명	576명	572명	621명	762명	148명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중진공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각 부서장은 직원이 사회공헌 활동에 참가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나 증빙 절차 없이 사회공헌 공가를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84) '22.1.1~12.20 기간 중 사적용무를 위해 외출을 사용한 임직원은 총 1,094명임

② 건강검진 공가 운영 부적정

중진공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원의 건강검진을 위해 2017.12.26.부터 건강검진 공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건강검진 시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건강검진 공가를 사용하고 있다.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휴가·휴직 제도)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및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 중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 복무 관리에 유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부터 2022년 10월 기간 동안 중진공 임직원들의 건강검진 공가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 외에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확진검사를 위한 ‘2차 검진 공가’를 사용한 임직원이 [표 24]와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24] 건강검진 공가(2차 검진) 사용 현황('18~'20.10월)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원	15명	27명	25명	53명	29명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중진공은 감사결과를 인정하면서 조퇴, 외출 제도 및 사회공헌 공가, 건강검진 공가가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 등을 개선·보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① 조퇴, 외출이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를 위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시고 임직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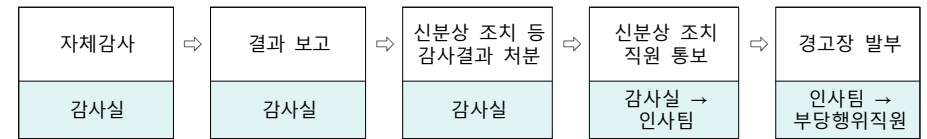
② 앞으로 임직원이 사회공헌 공가, 건강검진 공가를 관련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Ⅲ-13 자체감사의 신분상 조치에 대한 효력 확보 미흡

1. 업무 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고 한다) 감사실은 「감사규정⁸⁵⁾」에 따라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을 하고 감사결과 경미한 부당행위가 있는 직원에 대한 경고⁸⁶⁾ 등 신분상 조치를 한 후 인사팀에 통보⁸⁷⁾하고 인사팀은 해당 직원에게 경고장 등을 발부하고 있다. 자체감사 후 경미한 부당행위가 있는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절차는 아래 [그림 6]와 같다.

< [그림 6] 자체감사 후 경미한 부당행위가 있는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절차 >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2. 법령 등 관련 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공공감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85) 중진공 「감사규정」 제1조(목적) 감사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체감사기구의 운영과 감사직무수행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감사업무 수행을 체계화하여 자율적인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86) ▲ 중진공 「감사규정시행요령」 제31조에 따른 처분요구기준 상 '경고'는 부당행위의 정도가 주의 또는 시정사항 보다는 상대적으로 무거우나, 그 원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정황이 징계에는 이르지 못하는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로 하여금 과오를 반성하도록 훈계하는 처분으로 하고 있음.
▲ 중진공 「인사규정」 제34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동 규정 제3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행위의 성격, 과실의 정도 및 정상 등이 참작될 때 해당 직원에 대해 '경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87) 중진공 「감사규정시행요령」 제31조의4에 따르면 감사실은 감사결과에 따라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을 인계경영실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중진공 「인사규정」 제34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경고’ 직원의 명부를 비치하여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중진공 「감사규정」 제31조의3 제4항에 따르면 경고처분을 받은 자가 3년 이내에 같은 지적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중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중진공은 자체감사⁸⁸⁾ 활동을 통해 조직 및 직원 업무나 활동이 법령이나 기준·규정 등에 부합하도록 사후적 통제와 사전적 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대상 기간⁸⁹⁾ 동안 자체감사 후 조치한 결과는 아래 [표 25]와 같이 부당행위 등을 한 직원 등에 대해 징계 2건, 경고 306건, 주의 1,136건 등 총 1,711건 감사처분을 하였다.

< [표 25] 중진공 자체감사 처분현황(2017.1월 ~ 2022. 11월) >

처분 항목	징계	개인경고	개인주의	기타(행정처분)	합계
처분 횟수	2	306	1,136	267	1,711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중진공 감사실(이하 “감사실”이라고 한다)은 감사원의 신분상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지적⁹⁰⁾과 유사지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재발방지 유도 및 직원 경각심 고취할 필요로 2021. 8. 31.⁹¹⁾ 「감사규정시행요령」을 개정하여 감사실은 자체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 중 ‘경고’ 처분사항을 인재경영실에 통보하고 인재경영실은 ‘경고’ 처분대상자에 ‘경고장’을 발부하도록 하였다.⁹²⁾

88) 자체감사 종류 :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구분

89) 중진공 감사대상 기간 : 2017.1월 ~ 2022. 11월

90) 2021년 감사원 자체감사기구 평가 시 인사부서와 연계없는 신분상 조치의 효과성에 대해 지적 및 이에 대한 개선 권고

91) 2021.6월 내부결재 : (최종결재) ○○○○ ○○○, (협조) ○○○○○ ○○

92) 중진공 「감사규정시행요령」 개정(2021.8월) 이전의 경우 감사실은 자체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에 대해 감사실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음

중진공은 자체감사 후 사후조치로 ‘경고장’을 받은 직원의 경우 인사자료로 활용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고’ 처분을 받은 직원이 3년 이내 같은 지적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가중 조치하여 같은 부당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자체감사 내부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진공은 ‘경고장’을 받은 직원⁹³⁾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이루어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아래 [표 26]와 같이 자체감사를 통해 특정직원이 동일한 부당행위로 연속 지적받는 사례가 확인되고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이 235명⁹⁴⁾(20%⁹⁵⁾)에 이르는 등 자체감사 처분 실효성이 의심되는 실정이다.

< [표 26] 같은 부당행위로 지적받은 사례 일부⁹⁶⁾ 발췌 >

처분	현 소속	지적 사례	비고
	중소벤처기업 연수원 기술품질연수팀	■ 외부강의 신고 누락 : 주의('18.11월) → 경고('19.10월) → 경고('20.10월)	'경고' 연속 2회 이상
	경북지역본부 일자리창출팀	■ 시설자금 사정 시 근거서류 확인 불철저 : 경고('17.8월) → 경고('18.11월)	
	전남지역본부 일자리창출팀	■ 기술사업성평가 업무 불철저 : 경고('17.5월) → 경고('18.4월) → 주의('21.7월)	
	강원영동지부 일자리창출팀	■ 시설자금 사정시 근거서류 확인 불철저 : 경고('18.10월) → 주의('19.6월)	-
	본부	■ 외부 위촉위원 활용 기준 위반 : 주의('17.9월) → 경고('18.10월)	-
	사회가치실 업무지원팀	■ 외부 위촉위원 활용 기준 위반 : 주의('17.9월) → 경고('18.10월)	-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93) 「감사규정시행요령」 개정(2021.8월) 이후 자치감사를 통해 ‘경고장’을 발부받은 직원은 42명

94) 경북지역본부 000 00의 경우 경고 10회를 포함한 총 16회의 주의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000 00의 경우 12회 주의·경고 처분, 전북서부지부 000의 경우 11회 주의·경고 처분받는 등 사례 확인

95) 2017년 이후 자체감사를 통해 신분상 조치(주위, 경고, 징계)를 받은 직원 1,171명 중 235명이 2회 연속으로 지적을 받고 있음

96) 중진공 감사실이 제출한 자체감사 처분현황 자료에서 일부 사례만 발췌

【관계기관 의견】

중진공은 「감사규정」 따른 경고에 대해 적정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자체감사에서 신분상 처분을 받은 임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III-14 의원면직 제도 운용 부적정

1. 업무 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고 한다.)은 직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이하 “의원면직”이라고 한다.)을 하고자 할 때는 퇴직희망일 10일 전 사직원을 제출받아 검토 후 이사장이 허가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중진공 「인사규정」 제45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자체 또는 상급 감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는 의원면직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중진공은 최근 3년(2020. 1월 ~ 2022. 12월)간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 182명에 대해 모두 의원면직을 허가하였다.

중진공은 직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했을 때는 자체감사 및 상급 감사기관 등에서 해당 직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지 등에 대해 확인한 후 의원면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진공은 의원면직 직원 182명에 대한 허가 과정에서, 자체감사 활동 및 상급 감사기관 대응을 담당하는 중진공 감사실에 해당 직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지 확인하지 않는 등⁹⁷⁾ 의원면직 허가 제한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의원면직을 허가⁹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⁹⁹⁾

97) 중진공 인재경영실 000 00은 일부 직원의 의원면직 처리과정에서 해당 직원 조사중인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유선상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감사과정에서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98) 다만, 최근 3년간 의원면직자와 자체감사 후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 현황을 대조한 결과 감사기간 동안 의원면직 처리된 직원은 확인되지 않았음

그 결과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직원이 별도의 조치없이 의원면직 처리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관계기관 의견】

중진공은 앞으로 의원면직 신청 직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지에 대해 확인절차 등을 마련하여 의원면직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임직원의 의원면직시 비위관련 조사 중인지 여부 등 의원면직 허가 제한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의원면직 허가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99) 중진공 과거부터 관례적으로 의원면직 제외대상자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있었음

III-15 사내 대출제도 운영 부적정

1. 업무 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라고 한다.)은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중진공 주택자금 대여 및 관리요령(이하 “대여지침”이라 한다, 제정 1990. 4. 30.)」에 따라 무주택세대주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100)으로 직원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해 「생활안정자금대출규정(제정 2001. 5. 21.)」에 따라 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주택자금대출’과 ‘생활안정자금대출’ 운영 절차는 아래 [그림 7]와 같다.

< [그림 7] ‘주택자금대출’과 ‘생활안정자금대출’ 운영 절차 >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2. 법령 등 관련 근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개정 : 2021.7.29.102)」 (이하 “혁신지침”이라 한다) 제46조 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택자금(구입 또는 임차용)이

100) 중진공은 기금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 재무제표에 나타난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회계연도 만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현금으로 전액 출연하고 있음.

101) 중진공 노무복지팀

102) 2021. 7. 29. 「혁신지침」 개정 이전의 경우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대책(13.12.11)」과 「혁신지침(제정 2018. 3. 8.)」에 따라 주택자금 유자의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나 생활안정자금의 용자를 지원할 경우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103)’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주택자금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시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을 적용하고, 대출물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가. 주택자금대출제도 운영 부적정

중진공은 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화된 자산104)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1. 8월 이후105) 「대여지침」에 따라 23명의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하였다.

중진공은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할 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고 이자율은 분기별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 이상으로 적용하여 대출하여야 하며 대출물건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진공은 「대여지침」 상 대출 이자율 3% 고정금리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 적용없이 000 등 직원 23명[별표 3]에게 이자율 3%로 최대 7천만까지 대출해주었으며 대출물건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대신 해당 직원에게 보전채권인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가 2022년 4분기(10월기준) 5.34%임에도 시중금리의 56% 수준의 낮은 이자율로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하는 등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106)을 해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03) 매년 1월 1일(1분기), 4월 1일(2분기), 7월 1일(3분기), 10월 1일(4분기) 금리를 각 분기 중 적용
 104) 중진공 000 00은 과거 수지차보전기관(설립시~2002년도) 당시 적립 유보된 자산을 자본화하여 임직원 대여금으로 운용되었다고 진술하였음
 105) 조사 자료는 주택자금대출 규정을 명확하게 한 「혁신지침 개정(’21. 7. 29.) 이후로 하였음

또한, 「대여지침」 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근저당권설정 대신 보전채권을 제출토록 하는 등 「대여지침」에 「혁신지침」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실정이다.

나.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 운영 관련

중진공은 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1. 8월 이후 기준 143명의 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였다.

중진공은 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이자율은 분기별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 이상으로 하고 2천만원 한도내에서 대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진공은 「생활안정자금대출규정」 상에 대출 이자율 4% 고정금리와 대출한도 5천만원으로 명시하고 아래 [표 27]와 같이 직원 143명에게 이자율 4%로 최대 4천 5백만까지 대출해주었으며 2천만원 초과 대출 직원은 108명으로 확인되었다.

< [표 27] 생활안정자금 대출 현황(2021. 8월 ~ 2022. 11월) >

대출금액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합계
대출직원 수(명)	35	49	8	51	0	143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가 2022년 4분기(10월기준) 5.34%임에도 시중금리 75% 수준의 낮은 이자율과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는 등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107)을 해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06) 기재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7.29.)」에 따르면 사내대출 등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점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107) 기재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7.29.)」에 따르면 사내대출 등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점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관계기관 의견】

중진공은 복리후생 관련 규정 개정의 경우 노조 합의 사항이라고 하면서 노조합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진공 주택자금 대여 및 관리요령」 및 「생활안정자금대출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진공 주택자금 대여 및 관리요령」 및 「생활안정자금대출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별표 3]

< 주택자금대출 현황 >

연번	부서	이름	대출일자	주택면적 (㎡)	형태	대출금액 (만원)	이자율 (%)	근저당 설정 여부
1			2021-10-14	84	매매	70,000	3	미설정
2			2021-10-27	51	매매	70,000	3	미설정
3			2021-10-27	83	매매	70,000	3	미설정
4			2021-12-20	51	매매	70,000	3	미설정
5			2021-12-31	59	매매	70,000	3	미설정
6			2022-01-04	84	매매	70,000	3	미설정
7			2022-01-13	59	매매	70,000	3	미설정
8			2022-01-14	84	매매	70,000	3	미설정
9			2022-02-04	59	전세	55,000	3	미설정
10			2022-02-09	59	매매	70,000	3	미설정
11			2022-02-18	84	전세	70,000	3	미설정
12			2022-03-23	59	매매	70,000	3	미설정
13			2022-05-31	84	매매	55,000	3	미설정
14			2022-07-26	59	매매	70,000	3	미설정
15			2022-08-25	25	전세	70,000	3	미설정
16			2022-09-15	52	매매	70,000	3	미설정
17			2022-09-21	59	매매	70,000	3	미설정
18			2022-10-27	84	매매	60,000	3	미설정
19			2022-10-28	84	매매	70,000	3	미설정
20			2022-11-09	84	전세	70,000	3	미설정
21			2022-11-14	84	매매	70,000	3	미설정
22			2022-11-15	84	매매	70,000	3	미설정
23			2022-11-25	59	매매	70,000	3	미설정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1. 업무 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은 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자산관리 요령」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2. 관련 규정 등 근거

중진공 「자산관리 요령」 제13조에 따르면 자산관리 책임자와 분임자산관리 책임자¹⁰⁸⁾는 자산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자산의 취득, 처분, 변동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같은 요령 제15조 및 17조에 따르면 자산관리책임자와 분임자산관리책임자는 년1회 이상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재물목록과 개별자산을 확인하여 자산의 증감현황 및 과부족, 손·망실 등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중진공은 사회가치실장을 자산관리책임자로 하고 각 부서장을 분임자산관리 책임자¹⁰⁹⁾로 하여 각 부서에서 자산의 취득, 손망실, 불용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부서는 취득자산에 대하여 자산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자산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자산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2.12월 기준으로 71개 부서에서 부동산 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 11,130개, 부외자산 61,811개 등 총 72,941개의 자산을 자산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108) 「자산관리요령」 제4조에 따르면 자산관리책임자는 자산관리업무 부서장, 분임자산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장 및 지역본부장, 지부장을 말한다.

109) 분임자산관리책임자는 본부 처·BB 28개 부서, 연수원 및 청년창업학교 7개 부서, 지역경영지원처 및 지역본·지부 36개 등 총71개 부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임자산관리책임자는 「자산관리 요령」 제13조에 따라 각 부서가 관리하는 자산의 상태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매분기 자산증감현황서를 작성하여 자산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요령 제15조 등에 따라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는 등 자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실지감사 기간(’22.12.12~12.28) 중 중진공의 자산관리·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가치실을 대상으로 자산등록대장과 관리자산의 실제 보유, 운용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¹¹⁰⁾을 실시한 결과, 사회가치실은 고정자산과 부외 자산 총2,723개¹¹¹⁾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표 28]과 같이 직제개정, 관리부서 변경 등에 따라 관리전환을 하여야 하나 하지 않은 경우¹¹²⁾, 손망실되었거나 불용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¹¹³⁾,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어야 할 자산이 부외 자산으로 잘못 등록된 경우¹¹⁴⁾ 등 자산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표 28] 사회가치실 부적정 자산관리 현황 >

구분	고정자산(개)	부외자산(개)	비고
관리전환 미처리	336	1,921	* 관리전환 관리시스템에 관리전환 요청 중인 자산 629개 포함
불용 및 손망실 미처리	4	20	-
자산유형 구분 부적정	-	32	-
합계	340	1,973	-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110) 중진공이 관리하고 있는 고정자산과 부외자산의 전체(72,941개)에 대한 운영실태점검을 실지감사 기간(’22.12.12~28) 중에 실시하는 것은 여건상 한계가 있어 자산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사회가치실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함

111) 사회가치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은 고정자산은 507개, 부외자산은 2,216개로 총 2,723개임

112) 「자산관리요령」 제14조 분임자산관리책임자는 직제 개정 또는 자산의 효율적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분임자산관리책임자와 상호 협의하여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113) 「자산관리요령」 제18조 ① 분임자산관리책임자는 소관 자산이 화해, 도난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산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자산의 불용결정) ② 분임자산관리책임자는 불용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산처분조서를 작성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불용결정을 한다.

114) 「자산관리요령」 제7조 ① 고정자산으로 취득할 기준은 내용연수 1년 이상의 품목으로서 개별단가 기준으로 50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인 것으로 한다.

또한 각 분임자산관리책임자는 소관 관리자산에 자산관리번호, 자산명, 현재위치 등이 기록된 자산관리스티커를 부착·관리하여야 하나 현장 확인 결과 자산관리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자산이 다수 확인되었다.¹¹⁵⁾

아울러 중진공은 2022.7.7~7.21 기간 중 '22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였으나, 71개 부서 중 14개 부서¹¹⁶⁾가 정기재물조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등 자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중진공은 보유자산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못하고 있으며, 자산의 관리·운용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자산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도입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관계기관 의견】

중진공은 상기 감사결과를 인정하면서 향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자산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보유자산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효율적 자산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자산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115) 중진공 자산관리 업무 담당자인 사회가치실 000 00의 진술에 따르면 사회가치실 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자산관리(관리전환, 불용처리, 자산증감현황서 보고, 자산관리 스티커 부착 등)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제 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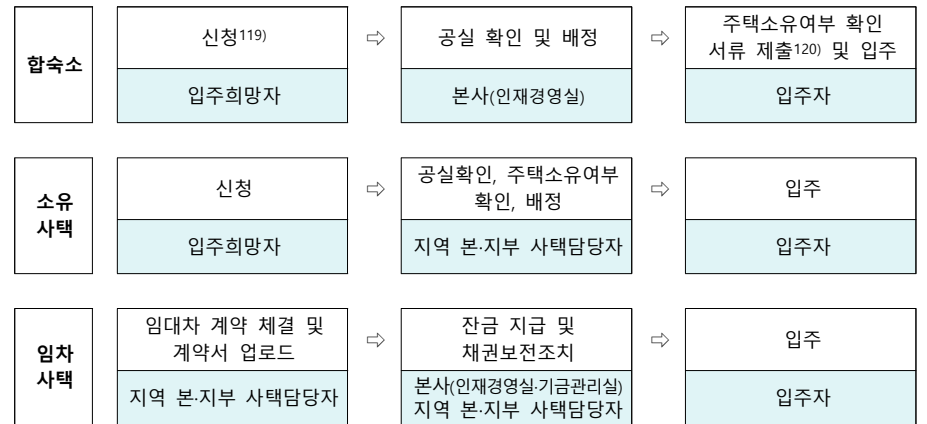
116) '22년 정기재물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는 기획조정실, 정보관리실, 정보보안실, 팩토리금융실, 벤처융합금융처, ESG진단기술처, 수출마케팅사업처, 온라인수출처, 기업인력연수처, 성과보상처, 호남연수원, 글로벌리더십연수원, 경기남부지부, 강원지역본부 등 14개로 확인됨

III-17 사택 관리·운영 부적정

1. 업무 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은 「사택 대여 및 관리요령」(이하 “사택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2022년 12월 기준 총 184실의 사택(입주 인원: 281명)¹¹⁷⁾¹¹⁸⁾을 운영하고 있다. 사택 입주 절차는 아래 [그림 8]과 같다.

< [그림 8] 사택 유형별 입주 절차 >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 117)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택”이란 임직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진공 명의로 취득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합숙소”란 단신부임직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공동 주거형태의 사택을 말한다.

118) 중진공 사택 현황('22. 12월 기준)

사택 유형	개 수	입주자 수
합숙소	50	147
중진공 소유사택	30	30
중진공 임차사택	104	104

- 119) 중진공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120) 본사 사택 담당자인 인재경영실 전현호 과장은 “합숙소 입주 시 당해 근무지의 주택소유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받는 서류로는 청약홈 사이트의 ‘주택소유여부확인’이 있으며 합숙소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동일세대내 상시거주자가 없는 단신부임직원이 대상이므로 부양가족 유무와 부양가족 주택소유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

2. 법령 등 관련 근거

중진공은 「사택 관리요령」 제2조21²¹⁾에 따른 사택대여 대상자에게 동 요령 제6조122²²⁾에 따라 각호의 서류를 징구하여 입주 자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 요령 제13조123²³⁾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퇴거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택 미소유 여부를 확인할 서류, 입주 기간, 관리대장 작성 등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중진공 「사택 관리요령」 제2조의2제1항124²⁴⁾에 따르면 사택 대여는 당해 근무지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²⁵⁾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21) 제2조의2(사택대여 대상자) ① 사택은 당해 근무지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서울지역 근무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파견, 교육훈련, 전보 등으로 단신부임한 직원의 숙식편의를 위해 합숙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근무자 중 단신 부임한 직원은 합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 22) 제6조(대여신청 및 심사) 사택대여 신청시 부서장등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징구하여 대여자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사택대여신청서(중진공소정서식)
 2. 본인 및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3. <삭제 2014.6.16>
 4. 입차예정주택 건물 및 토지등기부 등본, 도시계획확인원(단독주택의 경우), 거래사가조사서(중진공소정서식, 입차사택에 한함)
 5. 결혼예정신고서(해당자에 한함, 중진공소정서식)
 6. 주택 미소유 확인서(제3조제2항 관련)
- 23) 제13조(퇴거) ①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여사택을 소정기한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퇴직 : 퇴직일 익일. 단, 사망에 의한 퇴직일 경우에는 2월 범위내에서 퇴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전보 : 전보 명령일의 익일부터 2월
 3. 입주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당해근무지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 가. 매매에 의한 구입 : 잔금지급일
 - 나. 공동주택의 분양에 의한 구입 : 입주지정일의 말일
 4. 관련규정의 제재조치에 의한 수혜자격의 정지 또는 상실 : 정지 또는 상실된 날의 익일부터 1월
 5. 기타 중진공이 필요로 하는 경우 : 퇴거명령일의 익일부터 2월
- ② 입주자가 사유서를 제출하고 부서장등이 사유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기한내에 대여사택을 반환하여야 한다.
- 24) 제2조의2(사택대여 대상자) ① 사택은 당해 근무지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서울지역 근무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25) 제4조(부양가족의 범위) ① 당해근무지에서의 부양가족 범위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동일세대내 상시 거주자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배우자 및 직계비속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미만 또는 60세(여자는 55세)이상

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택에 입주 신청한 임직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동 요령 제6조126²⁶⁾에 따르면 본인 또는 부양가족 소유의 주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청약홈 사이트의 ‘주택소유여부확인’, 지방세 미과세증명, 구두 확인²⁷⁾ 등 통일된 기준 없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사택 184실 중 29실²⁸⁾의 경우에는 각 지역 본·지부에서 구두로만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않아 실제 입주자가 무주택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중진공 「사택 관리요령」 제1조129²⁹⁾에 따르면 동 요령의 목적은 중진공 사택의 대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동등한 입주 기회를 부여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동 요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택의 경우 입주 우선순위, 최대 입주 가능 기간에 대한 기준이 사택 관리요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³⁰⁾ 별도의 사택 관리대장 작성 등을 통해

- ② 사택대여일의 익일부터 2월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기간 내에 혼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26) 제6조(대여신청 및 심사) 사택대여 신청시 부서장등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징구하여 대여자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사택대여신청서(중진공소정서식)
 2. 본인 및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3. <삭제 2014.6.16>
 4. 입차예정주택 건물 및 토지등기부 등본, 도시계획확인원(단독주택의 경우), 거래사가조사서(중진공소정서식, 입차사택에 한함)
 5. 결혼예정신고서(해당자에 한함, 중진공소정서식)
 6. 주택 미소유 확인서(제3조제2항 관련)
- 27) 본사 사택 담당자인 000 00은 “진주 소재 소유 사택의 경우 이사금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임원 인사검증자료로 당해 근무지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해왔으며, 그 외 지역 소재 소유 사택의 경우 주로 기관장이 거주하고 있어 각 지역 본·지부 사택담당자가 구두로 당해 근무지 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진술
- 28) 합숙소4, 소유사택24, 입차사택1
- 29)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진공 사택의 대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30) 우리부, 고용노동부, 관세청, 국가보훈처 등 대다수의 정부기관 자체 관사규정에서 입주대상, 우선순위, 입주기간(2년~3년)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입주 가능기간, 최대 입주기간, 신규 입주희망자 부재시 계속 입주 가능 등이 규정되어 있음

입주자의 입주일, 퇴거일 및 과거 입주자 현황이 관리되고 있지 않다.¹³¹⁾¹³²⁾

그 결과 현재 사택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이 희망할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신규 입주를 원하는 직원은 사택에 공실이 없는 경우 입주하기가 어렵고¹³³⁾ 사택 과거 입주자, 입주 기간 등 전반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워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관계자 의견】

중진공은 감사 내용을 수용하며 지적 사항에 대하여 사택 관리요령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사택 입주 심사 시 당해 근무지 무주택 여부 확인 증빙 징구, 입주 우선순위, 입주 가능 기간, 관리대장 작성 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사택을 운영·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131) 고용노동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림교육원 <별지 서식>관사관리대장에 입주자 현황(입주자, 입주연월일, 퇴거연월일) 기재, 국립수목원은 <별지 서식>관사 입주자 현황에 입주자, 입주연월일, 퇴거연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132) 본사 사택 담당자인 인제경영실 000 00은 “합숙소와 소유 사택 입주 신청자에게 입주신청서, 입주자가 퇴거할 시 퇴거신청서를 징구하고 있지 않으나 입차 사택의 경우 중진공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입주신청자가 ‘입차사택 대어신청서’를 작성하고 입주하며, 현 입주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퇴거하고 다음 입주자가 들어올 시에도 동일하게 ‘입차사택 대어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주하고 있다. 이러한 입주자 변동 사항에 대해 각 지역 본·지부 담당자가 중진공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입주자 변경’을 처리하여 반영하고 있어 건별로 과거 입주자와 입주일 확인이 가능하다.”고 진술

133) 특히 본사(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합숙소는 현 요령상 입주 기간 제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계속 입주가 가능하여 공실이 없는 한 신규 입주 희망자의 입주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III-18 공공기록물 관리 부적정

1. 업무 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고 한다)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자체 「기록관운영규정」에 따라 중진공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를 공공기록물로 생산·등록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록물관리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기록물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3조 제4항과 「중진공 기록관운영규정」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보존용 파일 및 용기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진공 「회계요령」 제39조에 따르면 지출결의서에는 요구서 또는 내부 결재문서 등 지출원인행위요구서, 계약서 또는 승낙서 등 계약 입증서류, 검수조서·감독조서·준공검사조서 등 계약이행 검사서류, 청구서·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 등 당해채권자의 청구행위 서류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단위로 월별 지출증빙서철에 편철·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중진공은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문서시스템¹³⁴⁾을 구축(2005.11월)하여 공공기록물을 생산·수집·접수·

134) 중진공은 자체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분류·편철·보관·보존 등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비전자적 형태로 생산·수집된 기록물 등은 전자문서시스템의 비전자적 문서 등록기능을 활용하여 전자화하여(스캔)하여 관리하고 있다.

중진공은 비전자 형태로 생산·수집된 기록물의 경우 전자화하여 관리하고 원본 기록물은 보존용 과일 및 용기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하여 공공기록물의 진본성·무결성·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진공의 2021년도 지출결의서¹³⁵⁾ 관련 문서를 조사한 결과 아래 [별표 4]와 같이 비전자 형태로 생산·수집되는 일반수용비·관리용역비·회의비¹³⁶⁾의 지출결의서 증빙자료(간이영수증, 견적서, 계약서 등)를 전자화하여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전자화한 후 지출결의서 원본 증빙자료를 홍보실·기금관리실 등 10개¹³⁷⁾ 부서에서는 편철·보관·보존 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중진공은 비전자 형태의 지출결의서 원본 증빙자료의 편철·보관·보존 등 누락이 없도록 향후 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비전자 행태의 기록물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135) 지출결의서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생산·등록하고 있으며, 편철 및 관리 등은 통합정보시스템과 연동된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하고 있음.
 136) 중진공은 우리은행과 업무협의로 법인카드(우리BC카드) 매출진표를 중진공의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직접 출력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여 별도 증빙자료 수집이 불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진공은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부서운영비의 경우 법인카드(클린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음
 137) 중진공 본부 25개부서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홍보실, 기금관리실, 리스크준법실, 사회가치실, 정보관리실, 기업금융처, 수출마케팅사업처, 온라인수출처, 기업인력지원처, 창업지원처 등 10개 부서는 지출결의서의 원본 증빙자료를 편철, 보관, 보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별표 4]

< 2021년도 부서 수용비 지출 관련 증빙자료 원본 편철 및 관리 현황 >

구분	부서명	2021년도 증빙자료 원본 편철·관리 현황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관리용역비	회의비
1	비서실	전자적 편철·보관	전자적 편철·보관	전자적 편철·보관	전자적 편철·보관	실적없음	전자적 편철·보관
2	홍보실	"	"	"	복사본 (스캔) 보관	복사본 (스캔) 보관	"
3	감사실	"	"	"	전자적 편철·보관	전자적 편철·보관	"
4	기획조정실	"	"	"	"	실적없음	"
5	인재경영실	"	"	"	"	실적없음	"
6	디지털경영전략실	"	"	"	"	전자적 편철·보관	"
7	규제정책연구실	"	"	"	"	전자적 편철·보관	"
8	기금관리실	"	"	"	복사본 (스캔) 보관	실적없음	"
9	리스크준법실	"	"	"	복사본 (스캔) 보관	실적없음	"
10	성과관리실	"	"	"	전자적 편철·보관	실적없음	"
11	사회가치실	"	"	"	복사본 (스캔) 보관	전자적 편철·보관	"
12	비상안전실	"	"	"	전자적 편철·보관	실적없음	실적없음
13	정보관리실	"	"	"	복사본 (스캔) 보관	복사본 (스캔) 보관	전자적 편철·보관
14	정보보안실	"	"	"	전자적 편철·보관	전자적 편철·보관	전자적 편철·보관
15	기업금융처	"	"	"	복사본 (스캔) 보관	실적없음	복사본 (스캔) 보관
16	팩토링금융실	"	"	"	전자적 편철·보관	실적없음	전자적 편철·보관
17	ESG진단기술처	"	"	"	전자적 편철·보관	전자적 편철·보관	전자적 편철·보관
18	수출마케팅사업처	"	"	"	복사본 (스캔) 보관	복사본 (스캔) 보관	복사본 (스캔) 보관
19	온라인수출처	"	"	"	복사본 (스캔) 보관	복사본 (스캔) 보관	전자적 편철·보관
20	글로벌사업처	"	"	"	전자적 편철·보관	실적없음	"
21	기업인력지원처	"	"	"	복사본 (스캔) 보관	복사본 (스캔) 보관	"
22	기업인력연수처	"	"	"	전자적 편철·보관	전자적 편철·보관	"
23	성과보상처	"	"	"	전자적 편철·보관	전자적 편철·보관	"
24	창업지원처	"	"	"	복사본 (스캔) 보관	복사본 (스캔) 보관	복사본 (스캔) 보관
25	지역산업성장처	"	"	"	전자적 편철·보관	전자적 편철·보관	전자적 편철·보관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1. 업무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13.9월)」에 따라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21.10월)」을 마련하여 운영중이다.

2. 법령 등 관련근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13.9월)」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상품권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연간 구매계획 수립, 수령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배부대장 운용, 정보공개 등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중진공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21.10월)」에 따르면 사용부서는 상품권을 구매 또는 배부한 경우 상품권 구매대장 및 사용(배부)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일자·목적·수량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중진공 홈페이지에 연 1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확인된 문제점

중진공은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부서별로 구매대장에 기입하고, 배부현황을 사용(배부)대장에 기록하여 상품권이 구매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22년 상품권 구매내역을 확인한바, 경북지역본부의 경우 상품권을 구매할 때마다 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22.10.19. 이후 일괄 작성함으로써 지출부상 구매내역은 총 16회 4,550,000원인데 상품권 구매대장에는 16회, 4,400,000원으로

잘못 기재되는 등 상품권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¹³⁸⁾ 그리고 세종지역본부의 경우 2회의 구매내역이 구매대장에 누락되어 있고¹³⁹⁾, 전통시장 캠페인, 다과구입 등에 활용하기 위해 ’22.9.5. 온누리상품권 250장(2,500,000원)을 구매하고도 ’22.12.22. 현재까지 사용금액이 310,000원에 불과하여 상품권을 사용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중진공 홈페이지 상품권 사용현황에는 ’21년까지 상품권 사용내역을 공시¹⁴⁰⁾하였으나 ’19년부터 ’21년까지 상품권 구매내역¹⁴¹⁾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시하는 등 중진공은 상품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중진공은 세종지역본부의 경우 대전과 세종지역본부로 분소되는 과정에서 구매내역 누락(2건, 35만 원)이 있었고, 상품권 구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매하였으나 전액 사용하지 못하여 ’23년도에 사용예정이며, 중진공 홈페이지 ‘상품권 구입 및 배부현황’ 과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 및 배부 현황’ 등 2개의 게시판을 운영중이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메뉴를 정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상품권 구매, 사용 내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상품권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138) ’22.7.27./8.24. 구매금액이 모두 40만원인데 각 30만원과 35만원으로 잘못 기재
 139) 총 30만원 (’22.1.5. 15만원, ’22.1.26. 20만원)
 140) 중진공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상품권 구입 및 배부현황
 141) 연도별 상품권 구매금액 ’19년 343,850천원, ’20년 625,195천원, ’21년 460,440천원

IV. 처분 요약

1. 처분요구사항(총괄) : 주의·경고 17건(개인 9, 기관 8), 시정 5건, 개선요구 6건, 통보 7건

구분	건명	관계기관	처분요구		조치 기한	감사자
			기관	개인		
1	정책자금 융자제한 요건 확인·관리 부적정	중소벤처기 업진흥공단	기관주의 통보	-	'23.7월	
2	대출금 용도외 사용 관리 부적정	"	개선요구	-	'23.7월	
3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운영 부적정	"	통보 시정요구 개선요구	주의(1)	'23.7월	
4	보험 가입 누락 등 담보물 관리 소홀	"	기관주의 시정요구	-	'23.7월	
5	대여금 소송에 따른 지연 배상금 적용 부적정	"	기관경고	-	'23.7월	
6	공탁금(배당금) 수급 권리자 변경 미흡	"	통보	-	'23.7월	
7	담보공탁금 회수처리 미흡	"	시정요구	주의(2)	'23.7월	
8	법원 배당금 수령지연 부적정	"	시정요구	경고(1) 주의(5)	'23.7월	
9	통합정보시스템 관리 소홀	"	통보	-	'23.7월	
10	전환사채 인수계약 상 특약 설정·관리 부적정	"	개선요구	-	'23.7월	
11	출장관리 부적정	"	기관경고 개선요구 시정요구	-	'23.7월	
12	복무관리 부적정	"	통보 기관주의	-	'23.7월	
13	자체감사의 신분상 조치에 대한 효력 확보 미흡	"	통보	-	'23.7월	
14	의원면직제도 운용 부적정	"	기관주의	-	'23.7월	
15	사내 대출제도 운영 부적정	"	개선요구	-	'23.7월	
16	자산관리 부적정	"	기관주의	-	'23.7월	
17	사택 관리·운영 부적정	"	개선요구	-	'23.7월	
18	공공기록물 관리 부적정	"	기관주의	-	'23.7월	
19	상품권 관리 미흡	"	통보	-	'23.7월	

2. 개인 처분 명세 : 경고 1명, 주의 8명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처분계획			지적내용
				주의	경고	징계	
1				○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관리책임 소홀
2				○			담보공탁금 회수 업무 관련 업무 처리 미흡
3				○			담보공탁금 회수 업무 관련 업무 처리 미흡
4					○		담보공탁금 및 법원 배당금 회수 업 무처리 미흡
5				○			법원 배당금 회수 업무처리 미흡
6				○			법원 배당금 회수 업무처리 미흡
7				○			법원 배당금 회수 업무처리 미흡
8				○			법원 배당금 회수 업무처리 미흡
9				○			법원 배당금 회수 업무처리 미흡